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159-000958-10



Vaccination for tomorrow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www.cdc.go.kr



influenza



vaccination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위탁 의료기관용 | 2018.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159-000958-10



Vaccination for tomorrow

건강한 내일을 여는 예방접종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위탁 의료기관용 | 2018.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침 안내문

- 본 지침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관리 방침 및 변경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자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2018-2019절기 사업 내용 안내를 위해 배포 합니다.

첫 발간	2015. 8.
1차 개정	2016. 6.
2차 개정	2017. 7.
3차 개정	2018. 8.

동 지침 관련 문의 및 개정건의(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대표메일: nip01@korea.kr)

2017-2018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구분	2017-2018절기	2018-2019절기
WHO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	A/Michigan/45/2015(H1N1)pdm09-like virus A/Hong Kong/4801/2014(H3N2)-like virus B/Brisbane/60/2008-like virus	A/Michigan/45/2015(H1N1)pdm09-like virus A/Singapore/INFIMH-16-0019/2016(H3N2)-like virus B/Colorado/06/2017-like virus(B/Victoria/2/87 lineage) B/Phuket/3073/2013-like virus(B/Yamagata/16/88 lineage) * 2018-2019절기 부안군에서 사용할 3가 백신에 포함될 B형 바이러스는 B/Colorado/06/2017-like virus (B/Victoria/2/87 lineage)를 포함할 것을 권고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구분	대상	2017-2018절기	2018-2019절기
지원대상	어린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 9. 1.~2017. 8. 31. 출생자) * 유행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도래자 지원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 (2006. 1. 1.~2018. 8. 31. 출생자) * '19.2.28일 6개월 도래자까지 2회 접종 지원 (~4.30.)
	어르신	만 65세 이상 (1952. 12. 31.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1953. 12. 31. 이전 출생자)
사업목표 접종률	어린이	1, 2차 각 92.0%	80.0% * 1차 접종 및 1회 접종대상자 기준
	어르신	82.5%	83.0%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기간	어린이	2017. 7. 10.(월)~ (기간 제한 없음)	2018. 7. 9.(월)~ (기간 제한 없음)
	어르신	2017. 7. 10.(월)~8. 4.(금), 8. 5. 이후는 별도 절차에 따라 추가계약 가능	2018. 7. 9.(월)~8. 3.(금), 8. 4. 이후는 별도 절차에 따라 추가계약 가능
예방접종 실시기관	어린이	일부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사업시작일	어린이	2회 접종자 2017. 9. 4.~ 1회 접종자 2017. 9. 26.~	2회 접종자 2018. 9. 11.~ 1회 접종자 2018. 10. 2.~
	어르신	만 75세 이상 2017. 9. 26.~ 만 65세 이상 2017. 10. 12.~	만 75세 이상 2018. 10. 2.~ 만 65세 이상 2018. 10. 11.~
접종비용 (시행비)	어린이	18,400원 *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	18,600원 *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
	어르신	14,230원	16,310원

□ 기타 행정사항 및 지자체 협조사항 관련

구분	2017-2018절기	2018-2019절기	페이지
지침 구성	지침 내용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구성	지침 내용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부분에 포함된 일반사항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내로 통합	-
용어변경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변경 *단, 법정 서식의 경우 변경이 불가하여 기존 명칭인 '노인' 유지	-
사업 내용	-	○ 사업대상자 중 어린이의 경우 예방접종 시 보호자 동행 원칙 관련 내용 추가 - 부득이하게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 구득 후, 예방접종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유선상으로 충분히 설명한 후 접종 시행	p8
어르신 지원사업 사업기간 구분에 따른 비용상환 예외인정 기준	-	○ 당일진료 발생에 대한 진료비 청구 완료 시기를 11월 30일까지로 제한 ○ 2018. 9. 20.까지 행복e음에 등록된 장애인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 9. 20. 이후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 전에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p9
지자체-지역의 사회 협의체 구성	-	○ 시도, 보건소 역할 - 원활한 백신공급 및 안전접종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추가(권고사항)	p13~14, p20
기관별 역할	-	○ (추가) 유관기관 협조 - 복지부, 교육부, 지역의사회 협조사항 내용 추가	p15
사업 예산 관리	어린이 지원 사업의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은 당해연도 사업 예산 내에서 지급	----- 당해 연도 및 차년도 사업 예산 내에서 지급	p43

약 어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 ACIP: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예방접종심의위원회
- TIV: Trivalent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3가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 IIV3: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Trivalent,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3가
- IIV4: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Quadrivalent,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4가
- ccIIV3: cell culture-based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Trivalent, 세포배양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3가
- RIV3: Recombinant hemagglutinin Influenza Vaccine, Trivalent, 재조합 불활성화 인플루엔자 백신 3가
- LAIV4: Live-attenuated Influenza Vaccine, Quadrivalent, 약독화 인플루엔자 생백신 4가
- 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 예방접종 안내문
- 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국가예방접종

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1
가. 추진배경 및 목적	1
나. 추진 경과	1
다. 권장백신주	2
라. 예방접종 실시 기준	3
마. 2017-2018절기 사업 추진 실적	5
바. 2018-2019절기 사업 목표	7
사. 사업 내용	7
아. 법적 근거	10
2. 사업 관리 체계	12
가. 사업 추진 체계도	12
나. 기관별 역할	13
3. 백신 공급 관리	17
3-1.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17
가. 백신 구매 및 공급 개요	17
나. 백신 공급 절차 및 처리기준, 방법	18
3-2.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	23
가. 백신 구매 및 공급 개요	23
나. 위탁의료기관 백신 구매 방법	23
4.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업무	24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체결	24
나.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	35
다. 예방접종 일반원칙 준수	37
라.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37
마.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42

CONTENTS

별첨서식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51
2.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52
3. 예방접종 예진표	54
4.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55
5.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56
6.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57
7.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59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60
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61
10.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62
1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64
1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65

부록

1.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및 관련 약어	69
2. 어르신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70
3. 2018-2019절기 국내 유통 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 종류	83
4.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재분배 매뉴얼	84
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의료기관)	87
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업무권한 신청 매뉴얼(의료기관)	90
7. 노인 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93
8.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내 예방접종 전문교육 관리 매뉴얼	114
9. 백신 보관 지침	120
10.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	137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38
1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FAQ	146



I.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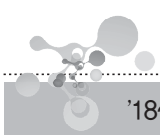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가. 추진 배경 및 목적

- 겨울철 어린이 및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접종률 향상과 질병부담 감소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 경향은 52주에서 차년도 1주 사이 유행 정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7~12세와 13~18세가 가장 높은 발생을 보임
- 어르신과 6세 미만 소아는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은 높지 않으나, 합병증, 입원 사망 위험이 높아 국가가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음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장시간 대기의 불편함, 안전사고의 우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보건소에서만 무료 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2015년부터 민간의탁의료기관 접종까지 확대 지원
- 또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016년 6~12개월 미만의 영유아, 2017년 6~59개월 어린이, 2018년 6개월~12세 어린이 무료접종 지원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나. 추진 경과

- 1997년부터 보건소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 시행
- 2002년 보건복지부장관고시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인플루엔자 우선접종권장대상자로 지정
- 2010년 고시 개정을 통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인구를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권장대상자에 추가
- 2015. 10.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어르신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의료기관까지 제공기관 확대



- 2016. 10. 4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의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2017년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어린이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 2017년 질병관리본부고시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하고, 생후 6개월~18세 소아청소년을 우선접종권장대상자로 지정
- 2018년부터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까지 어린이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다. 권장 백신주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항원 소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바이러스 유행 정보를 종합하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매년 초 북반구 당해 절기 백신 주를 권장함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

<2018-2019절기 WHO 백신 권장주>

- A/Michigan/45/2015(H1N1)pdm09-like virus
- A/Singapore/INFIMH-16-0019/2016(H3N2)-like virus
- B/Colorado/06/2017-like virus(B/Victoria/2/87 lineage)
- B/Phuket/3073/2013-like virus(B/Yamagata/16/88 lineage)

* 2018-2019절기 북반구에서 사용할 3가 백신에 포함될 B형 바이러스는 B/Colorado/06/2017-like virus(B/Victoria/2/87 lineage)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 * A(H1N1) 유행주는 6B.1에 속하며 항원형이 A/Michigan/45/2015과 유사하고, A(H3N2) 유행주는 세포에서 증식된 A/Hong Kong/4801/2014 및 A/Singapore/INFIMH-16-0019/2016와 항원형이 유사하나 유행지에서 증식된 A/Singapore/INFIMH-16-0019/2016에서 더 높은 항원성을 보여 권장백신주로 지정
- * 전 세계적으로 B형(Yamagata)이 유행하였으며, B/Phuket/3073/2013과 항원형이 유사함
- * B형(Victoria) 중 HA1, 162-163 double deletion 변이주는 B/Brisbane/60/2008 보다 B/Colorado/06/2017과 항원형이 유사하여 권장백신주로 지정



라. 예방접종 실시 기준

● 우선접종 권장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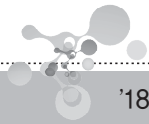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
 -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생후 60개월~18세 소아청소년’ 추가(2017. 9월 고시 제정)

- 접종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 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 50~64세 성인은 만성질환을 가진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에 따라 대응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 예방접종 권장 시기 및 방법

- 권장시기: 10~12월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12월~익년 4월), 백신 공급시기,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평균 6개월(3~12개월))을 고려하여 10~12월로 접종 권장
 - 권장시기(10~12월) 이후에도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미접종 시 접종 권장



- 1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유행 시기, 면역력 유지기간을 고려해 12월까지 접종을 미루지 말고 10~11월에 접종을 완료하도록 함, 단,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 9월 초순부터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 전 2차 접종을 완료하도록 함

* 2017년 제1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사항(2017. 4. 18.)

○ 접종 횟수 및 용량

- 만 9세 이상 소아 및 성인: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백신 종류	접종용량	접종방법	비 고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 IIV)	0.5ml	1회 근육주사	-

*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및 관련 약어<부록 1> 참고

- 생후 6개월 이상 만 8세 이하 소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2017-2018절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았으나 1회만 접종한 경우에는 2018-2019절기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그 외 과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횟수에 따른 2018-2019절기 접종 횟수는 유행 주, 국외 권고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전문가 논의 후 별도 안내 예정

• 접종용량

백신 종류	접종연령	접종용량
3가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생후 6개월~35개월	0.25 ml
	생후 36개월~만 8세	0.5 ml
4가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생후 6개월~만 8세	0.5 ml

○ 접종 부위 및 방법

접종연령	접종부위 및 방법
생후 6개월~35개월*	대퇴부 전외측에 근육주사
생후 36개월~	삼각근에 근육주사

* 13개월~35개월의 경우, 근육량이 적당한 경우에는 삼각근 접종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방접종 금기 및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백신의 금기 및 주의사항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금기사항	주의사항
○ 금기사항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주의사항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 동시접종: 다른 백신과 동시접종 가능

○ 계란 알레르기(불활성화 백신만 해당)

- 계란에 대해 두드러기만 있는 경우 접종 가능
- 두드러기 외 혈관부종, 호흡 압박, 어지러움 또는 반복적인 구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였거나 epinephrine 투여 또는 기타 응급내과 처치를 받았던 사람도 접종 가능. 이 경우 백신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함
- 백신제조 시 남아 있을 수 있는 계란 단백질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닭이나 계란에 심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접종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é syndrome)

- 1976년에 사용되었던 swine influenza vaccine과 달리 1977년 이후의 인플루엔자 백신에서는 접종 후 길랭-바레 증후군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음
- 그러나 접종 후 6주 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을 보였던 환자는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마. 2017-2018절기 사업 추진실적

● 절기별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 현황

○ 2017-2018절기 국내 백신 공급량: 2,467만 도즈의 백신이 공급되었음

〈절기별 인플루엔자 백신 국내 공급 현황〉

(단위: 만 도즈)

종류	용량	'13-'14	'14-'15	'15-'16	'16-'17	'17-'18
계		1,769	1,863	2,101	2,203	2,467
3가	0.25ml	141	106	118	132	208
	0.5ml	1,628	1,757	1,840	1,196	1,052
4가	0.5ml	-	-	154	875	1,207

* 자료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의 국가출하승인 현황

* 2018-2019절기에는 약 2,559만 도즈(3가: 0.25ml 139만 도즈, 0.5ml 1,209만 도즈, 4가: 0.5ml 1,211만 도즈)의 백신이 공급될 전망으로, 식약처의 국가검정 결과 등에 따라 수량 변동가능

● 접종 실적

○ 어르신 지원 사업

(단위: 개소, 건, %)

구분	시행기관수		접종실적(접종률)			예방 접종률
	보건소	위탁기관	계	보건소	위탁기관	
2015-2016절기	255	15,334	5,452,984 (100.0)	1,134,800 (20.8)	4,318,184 (79.2)	81.0
2016-2017절기	255	17,331	5,717,286 (100.0)	914,537 (16.0)	4,802,749 (84.0)	82.4
2017-2018절기	256	18,520	6,020,029 (100.0)	829,915 (13.8)	5,190,114 (86.2)	83.0

○ 어린이 지원 사업

(단위: 명, 건, %)

구분	접종 대상자	예방접종률		접종실적			
		국·예방접종 증+ 유료접종	국·예방 접종	합계	국·예방 접종	유료접종	
합계		2,140,389 ²⁾	83.5 ³⁾	78.9 ³⁾	2,221,989	2,122,814	99,175
2017-2018 절기	2회 접종	1차	68.1	67.0	487,161	479,564	7,597
		2차	715,589	60.7	60.6	434,011	433,372
	1회 접종 ¹⁾	1,424,800	91.3	84.9	1,300,817	1,209,878	90,939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수: 7,224개소

1) 과거 절기 기초 2회 접종 완료로 이번 절기 1회 접종에 해당하는 어린이



- 2) 2017~2018절기 접종대상자 사업기간(2017. 9. 4.~2018. 4. 30.)동안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 3) 예방접종을 합계는 1회 접종, 2회 접종 대상자 중 1차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접종률로 산출

바. 2018-2019절기 사업 목표

- 어르신 지원 사업: 만 65세 이상 접종대상자의 접종률 83.0% 달성
- 어린이 지원 사업: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접종대상자의 1차 접종 및 1회 접종대상자 기준 접종률 80.0% 달성

〈산출근거〉 2017~2018절기 접종률(2018. 4. 30. 기준) 참고

- 어르신: 83.0%/ 어린이: 78.9%
- * 국민건강통계(2016년) 기준, 1~18세(45.7%) / 1~5세(73.3%), 6~11세(55.6%), 12~14세(33.6%), 15~18세(17.1%)

사.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어르신 지원 사업: 2018년 기준 만 65세 이상(1953. 12. 31. 이전 출생자)
 - 어린이 지원 사업: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2006. 1. 1.~2018. 8. 31. 출생자)
 - *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적용, 단 실제 생년월일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상이하여, 보호자가 자녀의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분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변경
 -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자(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등 외국인등록 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
 -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는 사업대상에 포함
 - * 보건소의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내국인, 외국인)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리번호 발급 대상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예방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 * 기타 어린이 지원 사업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

〈참고〉 사업대상자 중 어린이의 경우 예방접종 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보호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동행이 어려운 접종 대상자는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소지하고 병원을 방문하도록 한다.

접종을 시행하는 의사는 사전에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및 예진표를 확인하고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해 접종 대상자 및 보호자(유선 및 SMS 문자 설명)에게 설명하고, 접종을 시행한다.

- *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등 관련 서식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보호자가 직접 다운로드 가능
- * 서식 다운로드 방법: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 → 예방접종관리 → 관련자료 다운로드 →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

● 사업 기간

- 어르신 연령별, 어린이 접종 횟수별 사업기간 구분

구 분		위탁 사업 기간
어르신 지원 사업	만 75세 이상 (1943. 12. 31. 이전 출생자)	2018. 10. 2.(화) ~ 11. 15.(목)
	만 65세 이상 (1953. 12. 31. 이전 출생자)	2018. 10. 11.(목) ~ 11. 15.(목)
어린이 지원 사업	2회 접종 대상	2018. 9. 11.(화) ~ 2019. 4. 30.(화)
	1회 접종 대상	2018. 10. 2.(화) ~ 2019. 4. 30.(화)

- * 어린이 지원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생후 6개월 이상인 경우 접종 가능
- *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 상환 불가
- * 어르신 지원 사업의 경우, 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사업 지속, 위탁의료기관은 위탁 사업 기간 종료 후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하며, 위탁 사업 종료 시 관할 보건소로 잔여 백신 반납
- * 어린이 지원 사업의 경우, 유행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 연장 가능, 보건소는 위탁 사업 기간 종료(2019. 4. 30.) 이후 잔여백신이 있는 경우 소진 시까지 접종 지속

- 만 65~74세 이하가 2018. 10. 2.~10. 10. 기간에 접종한 경우 시행비 상환 불가, 단, 아래의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시행비 상환 가능
 -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예방접종 시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 해당지역은 <부록 2> 확인
 - * 대상자는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 가능하며, 시스템에서 '지역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
-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단, 금연, 건강검진, 비타민 주사제 처방, 질병의 진료 목적이 아닌 단순 물리치료, 혈당검사, 혈압검사 등은 제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진료내역 확인 후 시행비 지급심사 가능, 진료내역 없이 실시된 접종 건에 대한 백신환수 등 의료기관 관리 조치 필요에 의해 기한 내(2018-2019절기는 2018. 11. 30.까지) 진료비 청구 완료
 - * 진료일과 시스템에 등록된 접종일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접종일 진료행위 발생에 대한 근거가 없어 비용상환 불가)
 -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 * 촉탁의 소속 지역의 관할 보건소가 촉탁의 접종 계획을 파악하여 사업시작 이전에 질병관리본부로 제출(지자체 공문 시행 예정)
 - * 대상자는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명단으로 접종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촉탁의 접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행비 지급 불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 * 「장애인복지법」 외 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
 - * 2018. 9. 20일까지 행복e음에 등록된 장애인은 시스템에서 장애인 여부 확인 가능, 9.20일 이후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 전에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
- 예방접종 실시 기관
- 어르신 및 어린이* 지원사업: 보건소(지소, 진료소 포함) 및 위탁의료기관
 - * 어린이 지원사업의 경우 접종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보건소 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관내 주민 및 예방접종 대상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 전 확인하도록 안내 필요
 - 위탁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시행

- 접종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가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공고
 - *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 정보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전국 보건소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
-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보건소가 접종 관리(촉탁의 접종 포함)

● 위탁의료기관 지원 내용

- 어르신 지원 사업: 예방접종 시행비 16,310원/1회 접종 상환, 사업 전 백신 현물 공급
- 어린이 지원 사업: 예방접종 비용(예방접종 시행비 18,600원/1회접종, 백신비는 보건복지부 공고 금액) 상환
 - * 당해연도 기본 시행비를 적용하되,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적용

● 사업 대상 백신

- 2018-2019절기 WHO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3가(유정란, 세포배양) 백신
 - 어르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3가 백신만 사용
 - *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파손 등으로 자체 보유물량(4가 백신)을 국가사업용으로 대체 사용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4가 백신 사용 허용
 - 어린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의료기관에서 4가 백신을 사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접종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 상환 불가

아. 법적 근거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제1항제14호,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관 및 실시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3호)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6호)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제2호, 제66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및 제68조(국가가 보조할 경비)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84호)
 - ※ 「의료법」 제2조(의료인)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예방접종 기록 보고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예방접종 정보의 입력),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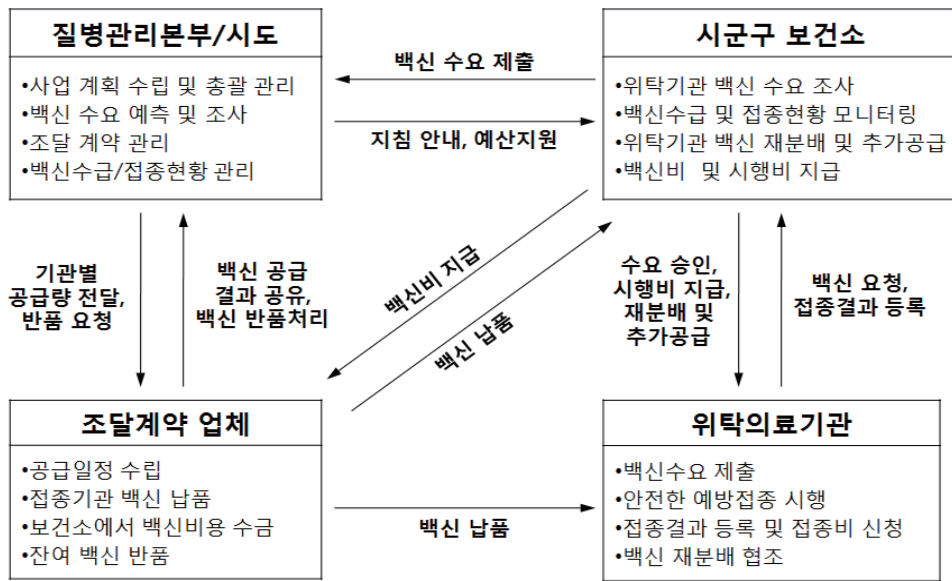
● 민감정보 처리 관련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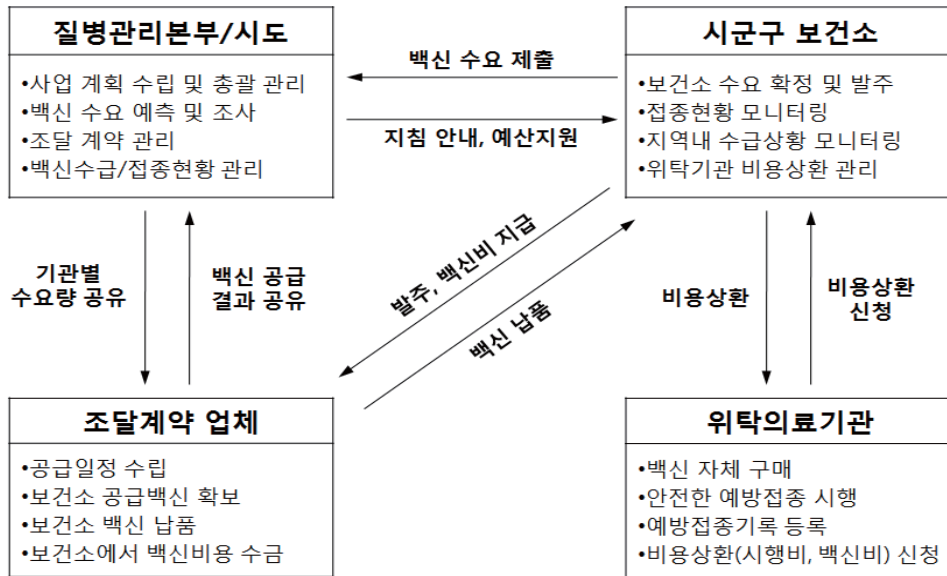
2 사업 관리 체계

가. 사업 추진 체계도

● 노인 지원 사업



● 어린이 지원 사업





나. 기관별 역할

● 질병관리본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백신 수요 예측 및 조사
- 백신 조달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 내용 공유
- 백신수급, 예방접종 현황 모니터링 및 접종률 관리
- 백신 부족시 대응을 위한 백신 추가 확보 및 공급 관리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예방접종 교육·홍보
- 보건소 백신 관리, 현장점검 실시
- 원활한 백신 공급(초기 배분 결정, 재분배,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가 구성되는 곳은 백신 공급(초기 배분 결정, 재분배, 폐기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초기 지자체에서 전체 백신 중 의료기관 배분비율, 의료기관별 배분 백신 수, 의료기관별 3주 내 백신접종 비율 등의 자료를 협의체에 공개

● 시도

- 관할 지역의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보건소 사업 관리(지역 내 접종현황 및 접종률, 백신수급, 위탁의료기관 관리 등)
- 백신 부족 시 대응을 위한 백신 추가 확보 및 공급 관리
- 원활한 백신 공급(초기 배분 결정, 재분배,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권고)
 - 지역의사회에서 사업 안내 및 안전접종을 위한 연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 지역의사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강사, 강의자료 지원 등 협조

□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권고)**

- **(배경)**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평가회('18.2.22.) 및 의료계 간담회('18.3.29.)를 통한 논의 결과 반영
- **(목적)** 현장상황을 고려한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안전접종을 위해 지역사회 공공-민간(의료계) 간 협력 강화
- **(구성)** 시·도(총괄), 시·군·구 보건소-지역의사회(협의체 운영)
- **(운영시기)** 사업시행 전 협의체 구성완료 및 1차회의(8월),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기간 내 필요 시 회의 개최, 사업 종료 후 평가 회의
- **주요 기능**
 - 지역 내 의료기관별 보다 정확한 초기 분배량 결정
 - 현장 중심의 신속, 정확한 추가공급 방안 논의
 - 원활한 재분배 및 회수를 위한 지역 내 협력방안 논의
 - 백신폐기 최소화 방안 논의
 - 필요 시 안전접종 관련 교육 등 실시
- **협의체 구성원별 역할**
 - (시·도)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결과 취합 후 질병관리본부로 공유
 - (시·군·구) 지자체-지역의사회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의사회) 지역 내 의료기관 의견 수렴 및 지자체 논의

● **보건소**

- 관할 지역의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어르신,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 위탁의료기관 관리(사전점검, 계약체결, 교육, 접종현황 모니터링, 시행비 및 백신비 지급 등)
- 원활한 백신 공급(초기 배분 결정, 재분배,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협조
-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수급 관리(수요조사, 사용 모니터링, 회수 및 재분배, 잔량 관리 등)
- 지역 내 어린이 사업용 백신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관리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및 국가피해보상 관리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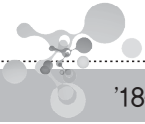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 위탁의료기관

-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시행(위탁계약 체결, 교육 이수,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 구매 등)
-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환경 구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 어르신,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 내역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관리(수요 제출, 백신 회수 및 재분배 협조 등)
-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의 적절한 수량 구매(그간의 어린이 접종 건수를 참고하여 과도한 구매를 지양)
- 예방접종기록 개인정보 관리 철저
- 관할 시도, 보건소 및 지역익사회와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등 업무협조체계 유지

● 백신 조달계약 업체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조달 업체>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공급일정 수립
- 납품기한 내 백신 공급 완료 및 질병관리본부에 공급 결과 보고
-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의 요청에 따라 공급 완료된 물품의 기관 간 운송 협조



- 보건소에서 백신비용 수급, 위탁기간 종료 후 접종자 주소지 기준으로 백신비 재정산
- 잔여백신 반품 및 비용 환수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 조달 업체>

- 보건소 발주확인 및 백신 공급
- 납품기한 내 백신 공급 완료 및 질병관리본부에 공급 결과 보고
- 보건소에서 백신비용 수급

● **백신 제조·수입사(도·소매업 등 공급사 포함)**

- 국가사업을 위한 조달물량의 원활한 공급, 국가와 공급 상황 공유
- 백신의 과도한 공급 편중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백신 공급량을 적절하게 조절

● **유관 기관 협조**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예방접종 안내 및 홍보 관련 보건복지부, 교육부 협조
- 백신 공급(초기 배분 결정, 재분배, 폐기 등) 및 안전접종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관련 지역의사회 협조



3 백신 공급 관리

기본 원칙

1.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은 현물공급,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은 개별구매 후 비용상환 방식으로 실시
2.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은 어르신 지원 사업 대상자에만 사용 가능하며, 어린이 지원 사업 대상에 사용 불가, 혼용 금지

〈어르신 지원 사업〉

- 보건소는 지역 내 미접종자 대비 보유 백신이 과다한 의료기관의 백신을 회수하여 백신이 부족한 기관으로 공급
 - 위탁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적극 협조
 - 보건소는 사업 종료 후 위탁의료기관 잔여 백신을 회수
-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백신회수 진행(조달계약업체에 회수 요청할 수 있음)

〈어린이 지원 사업〉

- 위탁의료기관은 그간의 어린이 접종 건수를 참고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구매

* 2018-2019절기 국내 유통 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 종류 <부록 3> 참조

3-1.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가. 백신 구매 및 공급 개요

- 원활한 백신 수급을 위해 정부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백신을 조달청을 통해 일괄구매하고, 예방접종 시행 기관에 현물로 공급 및 재분배
- 백신 구매 후 분배기준에 따라 조달계약 업체를 통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공급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공급 흐름〉

나. 백신 공급 절차 및 처리기준, 방법

백신 공급 절차

- ① 수요조사 → ② 수요확정 → ③ 조달계약 → ④ 초기배분 및 공급 → ⑤ 추가공급
→ ⑥ 백신 재분배 → ⑦ 잔여백신 관리

① 수요조사

● 질병관리본부 역할

-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조달구매량을 확정하기 위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국가사업 인플루엔자 백신 수요 조사

● 시도·보건소 역할

- 시도는 지난절기 접종률, 현재 인구수, 이번절기 접종 목표(만 65세 이상 인구의 83.0%),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총 예상수요량 결정
-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의 지난 절기 공급된 백신량, 총 접종건, 잔여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총 소요 예상량을 산출하고 보건소 사업량 및 위탁의료기관의 예상수요량 결정



② 수요확정

● 보건소 역할

- 지역 내 총 예상수요, 접종대상 인구, 지난절기 백신 공급량·사용량·회수량,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수요량 결정 및 시도 제출
- 위탁의료기관 소요물량의 90~95%^{*}는 사업 시작 전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사업 시행 중 추가공급 요청하는 의료기관에 추가배정
- * 초기 배정량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 시도 역할

- 보건소에서 제출한 백신 수요량에 대해 지역별 지난 절기 공급량·접종건·잔여량,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검토하여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질병관리본부 역할

- 시도에서 제출한 백신 수요량에 대해 지역별 지난 절기 공급량·접종건·잔여량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검토하고 백신 수요량 확정

③ 조달계약

● 질병관리본부 역할

- 최종 결정된 백신 수요량을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하여 조달계약 체결
- 조달계약 결과(비용, 업체 등)를 시도 및 보건소에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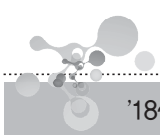
④ 초기배분 및 공급

● 위탁의료기관 역할

- 초기배분기준^{*}을 고려하여 위탁계약 기간^{**} 내 인플루엔자 전산시스템에 적정 수요량 등록

* 초기배분기준: 지난 절기 공급된 백신량, 지난절기 3주 이내 접종건, 총 접종건, 잔여량 등으로 수요량 등록화면에서 확인 가능

** 위탁계약 및 수요제출 기간: 2018. 7. 9.(월) ~ 8. 3.(금)



- 일일 접종 상한 조건(예진 시행의사 1인당 1일 100명) 참고하여 수요 결정
- 최소 신청량 및 공급단위: 20 dose
- 시스템의 백신 입고등록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시도 및 보건소 역할
 - 위탁의료기관의 1차 공급량 확정 시 초기배분기준 및 위탁의료기관별 제출 수요량을 참고하여 인플루엔자 전산시스템 내 배정량 등록
 - *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등록 기간: 2018. 8. 6.(월) ~ 8. 10.(금)
 - 위탁의료기관 백신 입고 시, 위탁의료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인수증 확인 후 시스템에 입고 등록
- 질병관리본부 역할
 - 시도에서 등록한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에 대해 최종 검토
 - * 질병관리본부의 공급량 확정 기간: 2018. 8. 13.(월) ~ 8. 22.(수)
 - * 조달계약 업체의 백신 공급계획 수립: 2018. 8. 23.(목) ~ 8. 31.(금)
 - 보건소 사업량 및 위탁의료기관 초기 배정량을 사업시작시기 이전 9월까지 공급 완료
 - * 조달계약 업체의 백신공급 기간: 2018. 9. 3.(월) ~ 9. 21.(금)

⑤ 추가공급

- 위탁의료기관 역할
 - 사업기간 중 백신 소진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필요한 백신을 시스템을 통해 관할 보건소로 공급 요청
 - 백신이 소진되기 전 추가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3-4일 전에 추가 요청
- 보건소 역할
 - 사업기간 중 관할 지역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부족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사전 대응



- 위탁의료기관에서 추가 공급 요청한 백신 수량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공급 여부 결정
- 백신 공급이 결정되면 보건소 보유백신(위탁의료기관 초기 배정 후 보관소에서 보관하는 5~10% 여유분 포함)으로 추가 공급

● 시도 역할

- 인플루엔자 구매수요 조사 시 제출한 추가 확보량을 사업초기, 재분배가 어려운 기간에 조달계약업체에 요청하여 지역 내 보건소에 추가공급 실시

● 질병관리본부 역할

- 시도가 추가 조달구매량을 사업초기 지역 내 보건소에 추가공급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지역의 백신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추가 조달구매량을 해당 시도 및 보건소에 공급

* 추가 공급된 백신의 비용은 공급받은 보건소에서 지급

⑥ 백신 재분배

- 사업 종료 시 폐기 백신 최소화를 위해 사업 기간 동안 백신 과부족을 모니터링하여 기관별 또는 시도별 재분배 실시

- 보건소-의료기관 간 백신 재분배 가능,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료기관 간 직접 재분배는 보건소 관리*하에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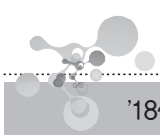
* 보건소 담당자가 <부록 4>의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재분배 매뉴얼'에 따라 백신 운송을 관리

- 의료기관 백신의 경우 재분배 대상 백신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확인·기록(온도 기록지 등 관리기록)이 있고, 용기 및 개별포장이 파손되지 않아 백신의 품질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분배 가능

- 백신 재분배 및 추가공급 시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소는 현장 상황에 따라 조달계약업체에 기관 간 백신 운송 요청 가능

● 위탁의료기관 역할

- 보건소가 지역 내 접종률, 기관별 백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재분배 요청 시 적극 협조



- 보건소의 백신 재분배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패널티* 적용
- * 차년도 백신 배정 시 불이익 및 '4.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 업무'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관리> 6)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동 지침 35p)' 위반 등을 적용하여 위탁계약해지 가능

● 보건소 역할

- 관할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간 백신 과부족에 대해 재분배 기본원칙 및 매뉴얼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백신 재분배로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 * 기본원칙은 미접종자 대비 잔여 백신이 과다한 경우 백신 회수, 백신이 부족한 기관(또는 지역)으로 백신 공급하도록 하며, 백신 재분배 매뉴얼은 <부록 4> 참조

● 시도 역할

- 사업 시작 전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백신이 부족한 지역 또는 기관 발생 시 신속 대응
- 백신 재분배 기본원칙 및 매뉴얼에 따라 관할 지역 내 보건소 백신 재분배 실시

● 질병관리본부 역할

- 사업 시작 전, 사업 기간 동안 백신 부족 상황 발생 시 추가물량 확보 및 수급이 어려운 지역 또는 기관에 신속 공급
- 백신 재분배 기본원칙 및 매뉴얼에 따라 동일 시도 외 보건소 백신 재분배 실시

⑦ 잔여백신 관리

● 위탁의료기관 역할

- 어르신 사업기간 종료(11. 15.) 후 잔여백신은 보건소 회수 시 반납
-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백신회수 진행
- 포장을 개봉한 백신 등 접종이 불가한 백신의 경우 현물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수 전 백신을 폐기한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 물량을 대체하여 반납

● 보건소 역할

- 위탁의료기관의 사업기간 종료(~11. 15.) 후 잔여 백신을 회수하여 백신반품 전 또는 소진 시까지 보건소 접종 실시



- 보건소 잔량 백신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회수 결정 시까지 백신을 폐기하지 않고 현물로 보관

* 현물로 남아있는 잔량백신을 근거로 백신비 정산

● 질병관리본부 역할

- 총액계약(어르신 국가사업용, 지자체 사업용, AI 대응요원, 시도 및 질병관리본부 추가공급용)으로 공급한 백신에 대해서만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명시된 반품 기준(3%)에 따라 회수 결정 → 조달계약업체에 백신 회수 및 백신비 정산 요청

* 총액계약 백신의 파손, 오접종 등으로 의료기관 자체보유 백신을 반납하는 경우에도(총액계약으로 공급한 제조번호와 상이) 회수 가능

3-2.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

가. 백신 구매 및 공급 개요

- 백신 안정성 및 국민들의 접종편의성을 반영하여 일반적인 영유아 백신의 공급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하고 백신 비용 상환

나. 위탁의료기관 백신 구매 방법

- 위탁의료기관에서 개별 구매하여 접종하고 등록된 건에 대해 비용상환 기준에 적합한 접종건에 대해 백신 비용 상환
- 그간의 어린이 접종 건수를 참고하여 적절한 백신 물량 구매
- 지원 비용은 인터넷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전자관보 ‘공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공고/공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공지사항’에 추후 공지 예정

4 위탁의료기관의 역할 업무

관리 원칙

1. 전산시스템을 통한 위탁계약 체결(필요시 서면 계약 가능)
2.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 확인
3. 접종 전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접종 방지
4.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 및 예진 후 예방접종 실시
5.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6. 당일 시행한 접종기록은 접종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당일 입력
7.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과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의 혼용 금지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 및 접종기관에서 최소 20~30분 대기하도록 안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부록 5) 및 예방접종 업무권한 신청 매뉴얼(부록 6) 참조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체결

1) 위탁계약 체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해당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계약 체결
- 계약 전 사업 내용 확인
 - 위탁계약 체결 전 사업취지, 사업지침, 위탁계약조건,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확인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관련 시스템 사용법 등을 충분히 숙지
- 어르신 지원 사업
 - (신규 및 재계약(갱신)) 체결 기간: 2018. 7. 9.(월) ~ 8. 3.(금) 약 1개월간
 - (추가계약) 기간 제한은 없으나, 사업초기에 대부분의 접종이 완료됨을 고려하여 가급적 사업시작 이전까지 계약 완료, 사업 시작 이후에는 지역 내 미접종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에서 위탁계약 체결 가능 여부 결정



- 대상: 위탁계약 기간 이후 의료기관 이전, 변경, 재개원, 신규 개원 등으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
- 방식: 신속한 계약업무를 위해 전자계약으로만 체결 가능
- 백신 배정 방법: 추가 계약하는 의료기관은 시스템을 통한 예상수요 제출이 불가하며, 보건소에서 백신 배정량을 결정하여 보건소 사업량(보건소로 공급된 위탁의료기관 여유물량 포함)의 재분배를 통해 공급
- * 필요시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에 백신 추가 공급 요청 가능

● 어린이 지원 사업

- 위탁계약 체결 기간: 연중 기간 제한 없이 계약 가능
- 기존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에 인플루엔자 항목을 표시 후 제출하여 참여 가능

2)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

1. 교육 수료증
2. 통장사본
3.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4. 사업 참여 확인증(어르신 지원 사업) 또는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어린이 지원 사업)

* 어르신 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부록 7> 참조

① 교육 수료증

- (교육신청)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 회원가입 및 신청
 - (기본교육) 국가예방접종사업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보수교육) 기존 위탁의료기관에서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여 재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 *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방접종 시행의사 본인의 정보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수료증의 수료자명이 예방접종 시행의사가 아닌 경우 인정 되지 않음
 - 과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최근 2년 이내 운영된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증을 인정함

* 교육이수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신규로 이수하도록 안내

- (수료증 발급)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 사업대상(어르신, 어린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상이하므로 '4.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 업무'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관리) 1) 위탁의료기관 교육' 을 참고하여 정확한 교육과정 이수 필요
 - ** 기본교육수료증(별첨서식 1)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수강과정(또는 '수료증 출력') → 수강종료 과정 메뉴에서 발급
- (수료번호 확인) 교육수료증 좌측 상단에 있는 수료번호는 전산으로 계약신청 시 교육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수료여부 검증 시 필요



② 통장사본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통장사본으로 예방접종 비용상환용 별도 계정의 통장 개설 권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①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어르신 인플루엔자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모두 참여하는 위탁 의료기관의 경우 동일 통장 사용 가능

* 전자계약의 경우 통장사본을 이미지파일로 변환(스캔 등) 후 사업별로 각각 업로드

③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전 점검항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 ‘〈별첨서식 2〉 사전 자율점검표’는 전산시스템에서 작성 및 제출 가능

- 어르신 지원 사업만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시행 전인 8월 말까지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
- 어린이 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상·하반기 자율점검표 제출로 같음
- 자율점검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방접종업무 위탁 해지 등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므로, 점검항목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함

〈사전 자율점검 항목〉

- 일반사항: 인터넷접속 가능 컴퓨터 보유, 예방접종 예진표〈별첨서식 3〉 및 예방접종 안내문(VIS) 비치 등
- 사업이해: 사업대상자, 백신 공급방법 등
- 실시기준: 대상자 확인, 예진표 작성, 과거접종력 확인(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접종 후 20~30분간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안내문 제공, 이상반응 신고제도 설명 등
- 기록보존: 예진표 보관기간(5년), 접종기록 전산 등록 등
- 비용상환: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등
- 백신관리: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유지, 주기적 온도 점검(1일 2회), 백신 유효기간 주기적 점검, 유효기간경과 백신 폐기처리 등

④ 사업 참여 확인증 또는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어르신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별첨서식 4>’ 제출

- 어린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어린이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별첨서식 5>’ 제출
 - * 예방접종 시행을 원하는 대상에 따라 0.25ml(생후 6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0.5ml(생후 3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 구분하여 작성
- 어르신, 어린이 지원 사업 모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시행 확인증 제출

3) 계약 방식

- 전자계약: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전산시스템에서 전자문서 방식으로 계약 체결
 - * 전자계약 방식의 위탁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기관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
- 전자서류 제출: ‘전산시스템’에서 위탁계약 시 필요한 서류(기본교육 수료증, 통장사본, 사전 자율점검표) 확인 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별첨서식 6>를 제출
- 계약체결: 의료기관에서 위탁계약서 제출(전자계약 요청) 후 보건소에서 등록된 문서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면 계약체결 성립
- 서면계약: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서면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체결
 - 서면 계약서 작성 시 예진의사 수는 자율점검표 상의 의사수와 일치해야 하며, 의료기관 기관정보를 반드시 등록

4) 계약 기간

- 계약 기간: 5년
 -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하여 재계약(갱신) 가능
 - * 2017. 10. 19. 이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기간 3년 만료 전 재계약 필요

5)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교부 및 비치

-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에 위탁의료기관 지정서(전자 또는 서면) 교부 <별첨서식 7>
- 위탁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
 - * 전자계약의 경우 전산시스템 화면에서 직접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출력 가능



6)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①~⑥항은 위탁계약조건임)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예진의사 변경 시, 변경된 예진의사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진의사 외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충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⑦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같이 위탁한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매년 8월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예방 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별첨서식 2>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 체결년도에는 계약 전 자율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접종기록을 먼저 전산 등록한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 ⑨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 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
 -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별첨서식 8>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 조건을 어겼을 때
 -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경우는 계약해지 신청서<별첨서식 9>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
 - 계약 해지일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
-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를 위탁계약 해지로 같음
- 의료기관의 이전,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해 연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음
 - *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연도 계약체결 기간 내 재계약 가능

* 어르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용하여 사업 시작 전 접종 시 계약 해지

위반 사례 횟수	조치사항
1회	- 사업시행 전 접종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 1년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제한(당해년도)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2회 이상	- 사업시행 전 접종사실이 확인된 즉시 계약 해지 및 백신 회수* - 3년간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 제한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불가



8)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 공고
 - 공고방법: 보건소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능한 방법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공지
 -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시에는 연 1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함을 공지
 - 공고 내용: 위탁의료기관명, 위탁기간 등
- 전산시스템에서 '위탁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 의료기관 찾기 > 어르신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실시간 검색 가능

9) 위탁의료기관 사전점검

- 지자체 특성에 따라 사업 시행 전(9월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신규 및 지난해 지적사항 발생 이력이 있는 위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간 1회 이상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사후 점검으로 같음
 - * 사전자율점검 내용이 허위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
 -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방문점검 결과로 같음 가능
 -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서식(별첨서식 10)
- 방문점검내용
 - 사업 수행 가능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일반현황,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이해도, 접종 전·후 예방접종 실시기준 준수사항, 예방접종 기록관리 및 백신관련 준수사항에 대하여 점검 실시

- 일반사항: 인터넷접속 가능 컴퓨터 보유, 예방접종예진표 및 예방접종안내문(VIS) 비치* 등
 -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이해: 사업대상자, 백신 공급 방법 등
- 실시기준: 대상자 확인, 예진표 작성, 과거접종력 확인(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예방접종수첩),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설명,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접종 후 20~30분간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안내문 제공, 이상반응 신고제도 설명 등
- 기록보존: 예진표 보관기간(5년), 접종기록 전산 등록 등
- 비용상환: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등
- 백신관리: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백신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 백신 보관 온도 2~8℃유지, 주기적 온도 점검(1일 2회), 백신 유효기간 주기적 점검, 유효기간경과 백신 폐기처리 등

10) 예방접종 기록의 개인정보 관리

- 예방접종 기록은 피접종자의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종기관 간 공유
- 접종기관 간 공유되는 개인정보는 예방접종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위탁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철저
 - *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 등 정보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예방접종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11) 위탁의료기관 교육

-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 의사는 모두 사업 참여 전에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예방접종이 안전하게 시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수수료증<별첨서식 1> 및 보수교육 수수료증<별첨서식 11>
- 어르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시행확인증 제출(2018. 7. 9. ~ 8. 3.)이 가능하며, 모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사업 시행일 전까지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함



- 어린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규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예방접종 시행의사가 해당 교육을 이수한 후 시행확인증을 제출함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내 예방접종 전문교육 관리 매뉴얼<부록 8> 참조

● 위탁계약 체결 전 교육

①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청 및 학습기간: 2018. 7. 3. ~ 11. 15.
- 대상별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기본 교육	NIP 사업 참여 신규 의료기관	1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등록시스템 사용방법
		3 예방접종의 원칙
		4 고령자에서의 예방접종
		5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6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7 백신의 보관과 취급
		8 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
보수 교육	기존 어린이 NIP 사업 위탁의료기관 또는 어르신 NIP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	1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등록시스템 사용방법
		3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4 백신의 보관과 취급
		5 계절인플루엔자의 이해

②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신청 및 학습기간: 2018. 3. 2. ~ 2019. 2. 28.
- 대상별 교육과정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기본 교육 I	NIP 사업 참여 신규 의료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 5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6 BCG 접종과 이상반응 7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8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9 백신의 보관과 취급 10 계절 인플루엔자의 이해 11 HPV 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1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 (의료기관용)
기본 교육 II	기존 어른신 NIP 사업 위탁의료기관으로 어린이 NIP에 추가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3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 4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II) 5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6 BCG 접종과 이상반응 7 HPV 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8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 (의료기관용)
보수 교육 I	어린이 NIP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위탁의료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3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4 백신의 보관과 취급 5 계절 인플루엔자의 이해
보수 교육 II	어린이 NIP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사업참여 위탁의료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3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4 백신의 보관과 취급 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 (의료기관용) 6 계절 인플루엔자의 이해



구분	교육대상	교육내용
보수 교육 Ⅲ	어린이 NIP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HPV 사업참여 위탁의료기관	1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3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4 백신의 보관과 취급
		5 HPV 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6 계절 인플루엔자의 이해
보수 교육 Ⅳ	어린이 NIP 사업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HPV 사업참여 위탁의료기관	1 2018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2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3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시 대응법
		4 백신의 보관과 취급
		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개요 및 시스템 사용방법 (의료기관용)
		6 HPV 백신과 예방접종 커뮤니케이션
		7 계절 인플루엔자의 이해

나.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

● 백신 인수 시 확인 사항

- 인수자는 반드시 주문한 수량과 인수받는 백신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수증에 서명
 -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 공급 요청 후, 주문한 전체 수량을 인수하고 인수증에 서명
 - * 수량 확인 없이 인수증에 우선 서명하고 백신을 수령하여 공급량의 차이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추가 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백신의 상표가 훼손되었거나 백신 파손을 확인한 경우 공급 업체에 교환 요청
 - 파손된 백신의 경우 자체 폐기해서는 안 되며, 공급 업체가 회수 전까지 보관
- 백신 인수 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 원본을 제출받아 2년간 보관

● 백신의 보관 방법

- <부록 9>의 백신 보관 지침에 따라 보관
-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백신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오염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사용 직전에 포장을 개봉하여 접종

- 포장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된 백신 예시



●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의 관리

- 백신 공급 이후 사업 시작 전까지 보관 오류로 인한 백신 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백신 보관 과정 또는 접종과정에서 접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 사업 대상자 외 대상(중복접종 포함)에 접종한 물량은 기관 자체 보유량을 사업물량으로 대체하여 사용
 - * 4가 백신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시행 이전 접종이 시행된 경우, 사용한 백신에 대해 기관 자체 백신으로 보건소에 반납(보건소는 의료기관과의 계약 해지)
- 어르신 지원 사업용으로 받은 백신은 어린이 대상으로 접종 불가
 - * 어린이 대상으로 접종한 경우 기관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여 어르신 지원 사업에 사용
- 과다한 백신 신청으로 사업 종료 후 백신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며, 사업 기간 중 잔여 백신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적극 협조
 - * 미협조 시 차년도 위탁계약 및 백신배정에 불이익 가능



● 어린이 지원 사업용 백신의 관리

- 어린이 지원 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매한 백신은 노인 대상으로 접종 불가
- 그 간의 어린이 접종 건수를 참고하여 과다한 구매를 지양하고 적절한 백신 물량 구매

다. 예방접종 일반원칙 준수

●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사업 대상자를 확인

-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면제자 포함)는 사업 대상에 포함. 단, 관련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면제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번호 발급 필요

●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관

- 예방접종 예진표(별첨서식 1)를 비치하고 예방접종 전 접종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작성하도록 함
- * 예방접종 예진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 및 보관 가능하며, 5년간 보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시 접종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

라.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1) 예방접종기록 전산 등록

- 중복접종 방지 등을 위해 가급적 접종 당일에 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함
-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방법은 시스템 사용 매뉴얼* 참조
 - * 시스템 사용 매뉴얼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예방접종관리→자료실→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내역 및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하지 않은 백신으로 보호자에게 자부담으로 접종한 백신(인플루엔자 4가)에 대한 예방접종내역을 허위로 전산등록(비용청구 포함)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예방접종 비용 상환

- 접종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가능, 비용상환은 접종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환
- 위탁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은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1일 소요) 후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가 비용 지급

● 예방접종 비용

구분	대상	1회 접종당 지원 비용
만 65세 이상	시행비	16,310원
	백신비	별도 공지 예정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시행비	18,600원
	백신비	별도 공지 예정

- 최종 확정된 지원 비용은 인터넷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전자관보 '공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공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 위탁의료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접종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내역 등록 시 '예방접종 등록' 화면에서 '비용상환 신청비용'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비용 확인 후 접종내역 등록(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됨)

● 비용상환 신청 결과 확인

- 비용상환 신청 내역은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 및 접수
 - * 주민등록번호 오류인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를 지정할 수 없어 신청내역 접수 불가('인증오류'로 구분됨)
 - * '인증오류' 내역은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서 조회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오류 인적정보 수정 필요
 - * 어린이 경우만 해당, 노인 인플루엔자는 보건소 접수완료가 되면 비용지급 단계로 넘어 감



● 비용상환 심사(어린이 경우 해당)

- 지자체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고, 심사기준 공개
 - (일반심사)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결정’, ‘상환불가’, ‘예외인정’으로 판정
 - * 비용상환 심사 시 등록자료 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 요청 가능

- 상환결정 :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접종 시 ‘상환결정’
- 상환불가 : 사업대상자 이외 접종, 중복접종, 불필요한 추가접종
 - * 중복접종 시 전산등록일이 빠른 접종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고, 전산등록일이 늦은 접종은 상환불가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수정 전까지 심사 불가
- (이의심사) 심사결과에 대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의신청’ 한 경우 보건소에서 재심사하여 상환여부 재결정
- (전문심사) 보건소에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전문심사 의뢰 및 회신결과에 따라 상환여부 결정
 - * 피접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수정 전까지 접수 및 심사 불가

● 예방접종비용 심사결과 통보

- 지자체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비용상환 인정여부 통지
 - * 예산부족 등으로 비용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도 비용심사 결과는 반드시 15일 이내 통지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위탁의료 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
- 예방접종 비용상환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위탁의료기관이 보완한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심사결과 인정여부 통지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불이익은 위탁의료기관 책임임

- 예방접종비용 지급
 - 비용상환 심사결과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상환결정 내역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비용 지급
 - 중복접종 발생 시 먼저 전산등록한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 지급
 - * 단, 노인 지원 사업용 백신의 경우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중복접종 등)을 시행한 경우 기관 자체 백신 물량을 사업물량으로 대체하여 사용
- 예방접종비용 이의신청
 - 위탁의료기관이 비용상환 불가 통지를 받을 경우, 비용상환 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비용상환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보건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실시함
 -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비용상환 이의신청)
- 예방접종비용 환수
 - 예방접종 비용 지급 후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접종으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 노인 지원 사업의 경우, 백신은 현물공급 방식이므로 적합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백신비는 환수가 불가하며, 의료기관 자체물량을 사업물량으로 대체하여 사용

3) 예방접종 비용상환 시 주의사항

- 외국인에 대한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심사 및 지급
 -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사업대상자에 대해 실시한 접종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상환 심사 및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 * 단,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 면제자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한 관리번호를 전산등록시스템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에 기입 후 비용상환 신청
 - * 재외교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 기입 후 비용상환 신청



- 예방접종 당일 별도 진료행위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제한
 -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 당일 별도 진료행위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함
-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접종에 대한 비용상환 불가
 - 노인 지원 사업의 경우 시행비 상환 불가
 -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 백신으로 보건소에 반납하고, 위탁계약 해지
 - 어린이 지원 사업의 경우 시행비 및 백신비 상환 불가
- 어린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연령별 접종용량을 준수*하고, 3가 백신을 사용하여 접종한 경우에만 비용상환 가능
 - * 35개월 이하 0.25ml 제형, 36개월 이상 0.5ml 제형의 백신으로 접종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접종 내역 등록,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인 3가 백신 대신 4가 백신을 접종하고, 3가 백신비용의 차액을 보호자에게 청구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3가 백신으로 접종기록을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의 법률 위반사항으로 조치될 수 있음
 - 예방접종기록 허위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83조제2항제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조건 위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 35개월 이하의 어린이에게 0.5ml 제형의 백신을 절반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불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마. 거동불편 어르신 사업대상자의 예방접종 관리

관리 원칙

1. 거동불편자: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자
2. 보건소는 거동불편자가 생활하는 기관에서 요청 시 다음과 같이 접종 시행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 중인 고령 환자의 경우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치의 또는 촉탁의에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권고
 - ② 요양병원은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내에서 자체 접종 후 비용상환 신청
 -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소속기관에서 위탁계약 체결 후 해당기관 의료진이 공급받은 백신을 이용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접종
 - ④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가 개인자격인 경우와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
 - * 개인 자격 촉탁의가 보건소 사업에 무료로 협조할 경우 촉탁의를 통한 접종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건소가 관리하도록 함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는 가급적 소속 위탁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접종 가능

1) 거동불편 노인 사업대상자 범위

- 거동불편 노인 사업대상자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기타 요양·복지시설 생활자 중 독립적으로 의료기관 왕래가 불가능한 만 65세 이상자임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의
 - 요양병원: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2)
 -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



2) 요양병원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별 사업 방식

구분	촉탁의 유무	촉탁의 소속	사업 방식
요양 병원	-	-	·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체결 후 위탁의료 기관으로 사업 참여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촉탁의 있음	의료 기관 소속	· 촉탁의 소속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사업 참여 - 소속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용 백신 사용 - 촉탁의가 주도하여 예진, 접종, 등록 실시 - 예방접종 시행비는 촉탁의 소속기관에 상환 ·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할보건소가 상이한 경우, 두 기관 간의 거리·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관할보건소가 접종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개인 자격	·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관리 * 촉탁의 협조가 있을 경우 촉탁의의 예진/접종이 가능하나, 시행비 청구는 불가하고, 백신 제공과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담당
	촉탁의 없음	-	· 신청기관에 한하여 보건소가 접종관리*

* 보건소 접종관리: ①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는 위탁의료기관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단기적으로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접종하도록 안내, ② 보건소가 보건소 백신으로 직접 접종, ③ ①의 촉탁의 계약이 없을 시, 보건소 관리 하에 인근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하고 시행비 상환

* 기타 요양·복지시설 생활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적용

3)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및 비용상환

● 요양병원

- 거동불편 어르신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바로 전산시스템에 등록
 - *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시설의 경우 실시한 접종력은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을 통하여 당일 입력
- 예방접종비용 상환방식은 일반 위탁의료기관 상환방식과 동일하며, 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예방접종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시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노인의료복지시설

- 촉탁의가 의료기관 소속인 경우 일반 위탁의료기관 및 요양병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하고, 예방접종 시행비 상환 신청 시 피접종자 관할 보건소에서 비용지급
- 촉탁의가 개인자격이거나, 촉탁의가 없는 경우 보건소가 접종관리 후 접종기록 전산등록

4) 촉탁의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접종 의 백신 관리

- 촉탁의는 소요예상 백신수량에 대해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관할 보건소로부터 배정 받을 수 있음
- 보건소는 지역 내 접종대상 인구수를 고려하여 사전에 백신을 확보하고 있으나, 촉탁의에 의한 접종대상은 타지역 주소지 접종자가 대부분이므로, 촉탁의는 사전에 접종계획을 보건소와 협의하여 백신을 배정받아야 함

바. 사업 예산 관리

관리 원칙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 집행·정산 등 처리절차 및 방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름
2.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건에 대해 백신비와 시행비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급

- 인플루엔자 사업비 교부시기: 3~4분기(국바-어르신 686억원, 어린이(생후 6개월~12세 이하) 653억원)

● 예산집행

- 비용상환 심사결과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상환결정 내역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 지급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비용지급 도입('15. 9. 21.)
- 어르신 지원 사업의 경우, 공급이 완료된 백신에 대한 대금은 보건소에서 조달계약이 체결된 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대금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후 14일 이내 지급 처리 완료
- 어린이 지원 사업의 위탁의료기관 비용상환은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예산 내에서 지급

● 정산보고

- 지자체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백신비, 시행비)에 대해 다른 사업비와 별도 구분하여 정산
 - * 정산보고 양식은 '2018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참조



5 예방접종 안전관리

가. 예방접종 주의사항

-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의 보관상태 및 유효기간을 매일 점검
- 예진 시 예방접종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과거 병력 확인
- 올바른 백신의 정확한 용량을 정확한 부위에 접종
-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예진 철저
- 접종 후 접종기관에 약 20~30분간 대기하며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 백신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접종
- 접종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안내
- 접종 당일 음주나 지나친 운동, 샤워 등은 피하고, 반나절 이상 안정을 취하도록 안내

나. 출장예방접종 제한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예방접종(의료행위)은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여야 함
 - 단,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을 확보한 후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의료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보건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무료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 ※ 안전한 접종 환경: 백신 콜드체인 유지, 접종 후 대기 장소 확보, 응급처치세트 및 앰블런스 등의 안전장비 구비

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국소반응: 접종부위 통증, 발적(접종자의 15~20%에서 발생)
 - 전신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접종자의 1% 미만에서 발생)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예방 및 발생 시 대응법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안내
 -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후속 조치 체계 마련
 -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 역할 숙지(예진 의사, 간호사, 보조원 등)
 - *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참조
- 이상반응 신고 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부록7 어르신 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의 이상반응관리 부분 참조>

라.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 *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71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고시 제2017-6호)에 명시된 접종 대상자
- 보상신청 가능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 유효기간 내 심의결과에 대해 1회 이의신청 가능
 - ※ 보상 결정 시 유효기간 이내에 추가 진료비 보상신청 가능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보상신청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일시보상금(및 장제비) 신청서/이의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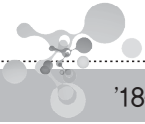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사본 1부(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 내역서

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

1) 역학조사

- 조사대상: 예방접종 후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
- 사례 발생 시 기관별 조치사항
 - 보건소 이상반응 담당자는 중증이상반응 발생사례에 대한 인터넷 신고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중증이상반응 신고관리
 - 시·도 역학조사반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실시 및 분석<별첨서식 12>
 - 해당 백신과 피해발생 경과 등 피해사례에 대한 확인
 - 질병 과거력, 이상반응 가족력 등 인적 특성 조사
 - 이상반응 발생 후 임상검사 자료 및 임상 경과자료 수집
 - 백신 보관상태, 접종과정, 기록 관리 상태 등 조사
 -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 이상반응 유무 확인
 - 사망 사례는 부검 결과 수집
 - 주치의, 예방접종 관련자 등 면담
 - 필요시 접종 백신에 대한 재검정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
 - 과거 유사사례 여부에 대한 문헌 고찰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관련성 규명
 -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2) 피해조사

- 조사대상: 예방접종피해 보상 신청 건
- 시도 역학조사반은 보상신청 사례에 대한 기초피해조사 실시
-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피해조사 결과 검토 및 필요시 정밀피해조사 실시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별첨서식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2.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3. 예방접종 예진표
4.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5.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6.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7.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9.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신청서
10.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1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1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별첨서식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기본교육 수료증



제 1610300001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재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기본교육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8)」)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별첨서식 2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 전 자 율 점 검 표

(보건소 제출용)

※ 의료기관 대표자께서 점검하시고 점검결과 란에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등 록 사 항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전 문 과 목 (표 시 과 목)		
주 소(소재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F A X 번 호		이 메 일 주 소		
예 방 접 종 업 무 담 당 인 력	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의 사 : 명 <input type="checkbox"/> 간 호 사 : 명 <input type="checkbox"/> 행 정 요 원 : 명	<input type="checkbox"/> 간 호 조 무 사 : 명 <input type="checkbox"/> 전 산 요 원 : 명	
일반사항 및 접종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일반사항				
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2)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3) 예방접종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2. 인플루엔자 사업 이해도				
1) '18년 사업대상자를 알고 있다.				
2) 어르신 및 어린이 지원 사업별 백신 공급 방식을 알고 있다.				
3. 접종 전				
1)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접종 대상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작성한 예진표를 확인하면서 접종대상자를 예진하고 진찰소견 등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피접종자의 과거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피접종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접종실시		
1) 준비된 백신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을 접종하기 전 손을 비누로 씻거나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정확한 접종부위, 접종용량, 접종방법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주사 후 마른 솜이나 거즈로 접종부위를 가볍게 수 초간 눌러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접종 후		
1)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접종 후 20~30분 정도 접종의료기관에 머물도록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 시 접종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접종내역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비용상환		
1) 전산등록이 지연되어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산등록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예	아니오
8. 백신관리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백신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성애가 끼지 않는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음식물과 함께 보관하면 안됨)하며, 「백신전용 냉장고」 및 「백신의 보관관리」 표시를 냉장고 외부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백신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관온도를 2~8℃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부착하여 1일 2회 이상 온도를 점검,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주기적으로 백신 유효기간을 확인하며,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을 냉장고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처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		
위 점검자(대표자)		(서명)



별첨서식 4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①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교육자료 수령 및 사업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②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시행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시행 백신 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시행여부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국가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백신으로 사업 수행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합니다.

20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별첨서식 5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보건소 제출용)

기 관 정 보			
기 관 명		요양기관번호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소재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대상 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시행여부	
결핵	BCG(피내용)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간염	Hep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Tdap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폴리오	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DTaP-IPV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Hib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PPSV(다당질)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MM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수두	Var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A형간염	HepA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일본뇌염	JE(사백신-취뇌조직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JE(사백신-베로세포 유래)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JE(생백신)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인플루엔자	Flu(0.25ml)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Flu(0.5ml)	<input type="checkbox"/> 시행	<input type="checkbox"/> 시행하지 않음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20 . . . 대표자 (서명) </div>			



별첨서식 6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	---

제2조	“을”	의 료 기 관 명	요 양 기 관 번 호
		요 양 기 관 종 별	표 시 과 목
		주 소 (소 재 지)	
		전 화	전 자 우 편 소 주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면 허 종 별	면 허 번 호
	의 료 정 보 시 스템	<input type="checkbox"/> 사 용 ※ 사 용 시 업 체 명 : _____ <input type="checkbox"/> 미 사 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	---------	----------

제4조	위탁계약 범위	<input type="checkbox"/>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예방접종업무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예방접종업무
-----	---------	---

제5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갑은 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을이 제2조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과실로 인해 예방접종업무가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제6조	계약기간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	---

갑과 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을>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m²]

(뒤쪽)

〈위탁계약조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위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
-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 ⑥ 개인의 과거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별첨서식 7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구-00(전자 또는 서면)-00-000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

1. 의료기관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예방접종업무 위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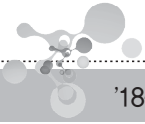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귀 기관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m²]



별첨서식 8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 해지 통지서

수 신 : ○ ○ ○ 의료기관장

○ ○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다 음 -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해지 사유 :

해지 일자 :

※ 계약 해지일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예정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첨서식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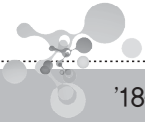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방문점검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 전 방 문 점 검 표

등록사항					
기관명		기관전화번호			
요양기관번호		사업참여일			
전문과목 (원장)		전문과목 (기관표시)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일반사항					
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2)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를 방문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있다.					
3) 예방접종 예진표를 충분히 비치하고 있다					
4) 예방접종 안내문(VIS: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2. 인플루엔자 사업 이해도					
1) 2018년 사업대상자를 알고 있다.					
2) 어르신 및 어린이 지원 사업별 백신 공급 방식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실시 관련					
1)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거 접종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예방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피접종자(또는 보호자)를 접종 후 20~30분간 접종의료 기관에 머무르게 하여 이상반응을 관찰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안내문 (VIS: Vaccine Information Statements)'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피접종자(또는 보호자)에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제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4. 기록보존					
1) 예진표를 정해진 기간(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예방접종의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5. 비용상환					
1) 전산등록이 지연되어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 먼저 전산등록 한 의료기관에 비용상환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백신관련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매우 잘함	잘함	미비함	매우 미비함	
1) 백신관리 전담자 및 대체요원이 지정 되어있다.					
2) 백신 입고 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수령 하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 백신전용 냉장고는 냉동고의 문이 따로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다.					
4) 성애가 끼지 않는 전용 냉장고에 백신만 보관하고 있다 (음식물 보관여부 확인).					
5) 「백신전용 냉장고», 「백신의 보관관리」 표시를 냉장고 외부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있다.					
6) 백신 전용 냉장고는 백신보관 온도 2~8℃를 유지하고 있다.					
7) 냉장고 내부 안쪽에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다.					
8) 1일 2회 이상 백신전용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9)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을 냉장고 앞쪽에 배치하고 있다.					
10)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1)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은 관리방침에 따라 폐기 처리한다 (폐기 대장 등).					
종합 의견					
점검일 20					
점검자					(서명)



별첨서식 1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보수교육 수료증



제 1610400001 호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교육 수료증

소 속 :

직 군 : (면허번호:)

성 명 :

소 재 지 :

귀하는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보수교육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17)」)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직인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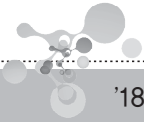
별첨서식 1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서



1. 조사경위	
조사 주체	_____시(도) 역학조사관 _____ (연락처: _____)
조사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조사 대상 정보	○ 성명 : _____ ○ 성별 : _____ ○ 접종 당시 연령 : 만 _____세 ○ 주민등록번호: _____ - _____ ○ 주소지: _____ ○ 이상반응 의료기관 진단명 : _____ (질병 코드: _____)
조사 분류	<input type="checkbox"/> 피해보상 신청건 조사 <input type="checkbox"/> 신속대응건 조사 (<input type="checkbox"/> 중증 이상반응 <input type="checkbox"/> 집단 이상반응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조사내용											
예방접종 내역	<table border="1"> <thead> <tr> <th>예방접종종류</th> <th>제품명</th> <th>제조회사</th> <th>제조번호</th> <th>유통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예방접종종류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통기간					
	예방접종종류	제품명	제조회사	제조번호	유통기간						
예방접종 예진의 및 접종자	○ 접종일시 (년/월/일/시간) : _____ ○ 접종부위 : _____ (좌/우) ○ 접종방법 : <input type="checkbox"/> 근주 <input type="checkbox"/> 피내 <input type="checkbox"/> 피하 <input type="checkbox"/> 경구 ○ 접종 후 관찰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접종 후 주의사항 교육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피해발생경위	○ 최초 증상 및 증상 발생 일시 : _____ ○ 신고 경위 : _____ ○ 임상 경과 (증상, 일시, 주요 검사, 방문 의료기관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 _____ - _____ ○ 조사 당시 임상 경과(원래, 회복 중, 입원(일반, 중환자실), 사망, 영구적 장애 등) : _____										
이상반응 중증도	<input type="checkbox"/> 경증 <input type="checkbox"/> 중증 (<input type="checkbox"/> 입원 또는 입원 연장, <input type="checkbox"/> 영구적인 장애, <input type="checkbox"/> 선천성 기형, <input type="checkbox"/> 생명 위협, <input type="checkbox"/> 사망)										
피해자의 과거력	○ 기저 질환 및 의학적 과거력 : _____ ○ 가족력 : _____ ○ 발육상태 : _____ ○ 임신 여부(성인 여성인 경우) : _____ ○ 과거 동일 예방접종 접종력 : _____ ○ 접종 전후 급성 질환 발생력 : _____ ○ 접종 전후 약물 복용력 : _____ ○ 알레르기 기왕력 : _____										



주요 검사 소견 <small>(검사 시행 날짜 병기)</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 진찰 소견 : ○ 실험실적 검사 소견 : ○ 영상학적 검사 소견 : ○ 기타 :
관련자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진의 : ○ 접종자 : ○ 보호자/환자 면담 : ○ 담당의사 :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의 이상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제조번호, 동일 의료기관, 동일 일자 접종자 : ()명 중 이상반응 없는 사람 ()명, 이상반응자 ()명(이상반응 종류:)
백신관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보관 상태 : ○ 정전여부 : ○ 백신 구입량 : ○ 백신 사용량 : ○ 생물학적제제출하증명서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특이사항:) ○ 백신냉장고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특이사항:) ○ 냉장고 온도 : (예방접종약품 보관냉장고 점검표) ○ 온도측정방법 : 외부측정장치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자동온도기록장치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 콜드체인 유지 :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불량 ○ 자가발전기 :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관련 문헌 검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GACVS : ○ 미국 IOM : ○ WHO AEFI Guideline : ○ 기타 연구 문헌(연구 디자인 병행 기재, 예) 사례-대조군 연구, 사례 보고 등) :
인과성 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자체의 문제 : ○ 예방접종 과정상 오류 : ○ 진단기준 부합 여부(이상반응 역학조사 지침, Brighton Collaboration case definition 등) - - - ○ 알려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인지 여부(출처 포함) - - ○ 타 요인에 의한 질환 발생 가능성 평가(질환의 알려진 주요 원인, 선행 증상 검사 결과 등)
잠정결론	<p>_____</p> <p>(인과성 평가: definite, probable, possible, unlikely, definitely not related)</p>

부 록

1.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및 관련 약어
2. 어르신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3. 2018-2019절기 국내 유통 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 종류
4.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재분배 매뉴얼
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의료기관)
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업무권한 신청 매뉴얼(의료기관)
7. 어르신 지원사업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8.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내 예방접종 전문교육 관리 매뉴얼
9. 백신 보관 지침
10.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1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FAQ





부 록 1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및 관련 약어



1. 인플루엔자 백신 종류

- 불활성화(Inactivated)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Live-attenuated)이 있음
 - 불활성화 백신은 전바이러스(Whole virus), 분할(split) 및 아단위(subunit) 백신이 있는데 현재 사용되는 백신의 대부분은 분할백신임
- 일반적으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두 가지 아형(H1, H3) 및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한 가지에 대한 항원이 포함되어 3가(Trivalent)로 만들어짐
 - * 2015년부터 B형을 1개 더 추가한 4가(Quadrivalent) 백신 허가, 유통

2. 인플루엔자 백신 약어 변경(미국 ACIP 권고 : '13.4.18.)

- 기존에는 약독화 생백신(LAIV : Live-attenuated Influenza Vaccine)과 불활성화 백신(TIV : Trivalent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으로 구분
- 불활성화 백신 생산 방법이 다양해졌고, 항원 수도 두 종류(3가, 4가)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백신 제조방법과 포함 항원수 확인 가능하도록 약어 변경
- 인플루엔자 백신 약어

IIV3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Trivalent
IIV4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Quadrivalent
cclIV3	cell culture-based Inactivated Influenza Vaccines, Trivalent
RIV3	Recombinant hemagglutinin Influenza Vaccine, Trivalent
LAIV4	Live-attenuated Influenza Vaccine, Quadrivalent

* 균주당 항원량이 15 μ g인 경우 표준용량(standard dose), 15 μ g 이상인 경우 고용량(High dose)으로 표기

부 록 2

어르신 접종시기 연령구분에 따른 지역특성 예외인정 가능 지역

1. 지역특성에 따른 예외인정 가능 지역(총괄)

구분	해당 시·군·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안산시, 화성시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춘천시, 강릉시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군산시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목포시, 여수시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진주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2.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제2조(의료취약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50호)

구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 대구	달성군
2. 인천	강화군, 옹진군
3. 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4. 강원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5.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6. 충남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7. 전북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8.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9.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 경남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 제주	서귀포시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 (2018.7.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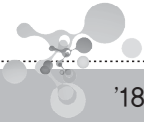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 최소 행정구역이 시·군·구로 되어 있으므로, 예외인정 적용은 시·군·구까지로 함

가. 섬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용유동	대무의도, 소무의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강화군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불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화성군	우정면	국화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대산읍	응도
	서산시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응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선유도, 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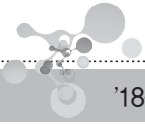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전남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륵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울도, 외달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낭도, 사도, 추도, 조발도, 둔병도, 여자도, 송여자도, 적금도
		남 면	금오도, 수향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사양도, 봉호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흥도
	보성군	별교읍	장도, 오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향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총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넓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한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황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선도, 울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약도, 화도
		임자면	본도, 수도, 재원도, 부남도
		자은면	본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흥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울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본도, 자라도,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령도
		팔금면	본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암태면	본도, 추포도,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향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육지면	육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랑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사등면	고계도
		둔덕면	화도
		거제면	산달도
	남해군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호도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삼산면	와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나. 벽지지역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상 최소 행정구역이 시·군·구로 되어 있으므로, 예외인정 적용은 시·군·구까지로 함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마곡길, 모곡로 463~535	
		내면	울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9~198, 살둔강변길 9~200	
			울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삽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골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233, 봉명로 227번길 6~68, 봉명로 593번길 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연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1211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길 70-96-12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549-33	
		가곡면	(풍곡)덕동 심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111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2리)별막, 축덕	수림대길 698~714-66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곶리, 발왕동, 자철지	신기봉산로 1030~1414-78
		대관령면	(용산2리)위곧은골, 윗노삼동	올림픽로 1062-6~1076-5 원복길 608-14~645-4
			(유천3리)선바위	원복길 542-6~593-14
	양양군	현북면	(여성전2리3반)가진동	부연동길 1303~1459-69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85~1516 노루골길 384~456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운차3리)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갖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798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밭길 51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한석산로 2063~2387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신월리	신월로, 신월안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밭길 조침령로 2092-13~2250		
			(반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란천로 1130~1875, 개안약수길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5,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512~724-48, 관대바위길 491		
			어천3리	관대바위길 38-18~278, 꽃내마루길 20-20~136 꽃대마을길 48-25~202		
			흘2리	흘리령길 95~398, 흘리령1길 60~203		
		현내면	배봉리	배봉길 2~14, 백두대간로 1097~1247-14 금강산로 737-22, 명파2길 29~35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931-14, 마달1길 1-5~90 마달2길 19~52, 89-3~176, 유천쌍계길 53, 245 건봉사로 747-6~747-12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3,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호대로 9049~9109, 통일전망대로 180		
		속초시	설악동	-	설악산로 1119-542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용전1길 6-11~422-4, 용전리 1807
	단장면			(감물리)땅끝마을	용소길 2-3~264, 용소2길 1~24-2	
				(고례리)바다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고례5길 11-5~26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밭길 19~80-13, 화약산길 351~487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경남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청도면	(조천리)무시덤마을	조천길 257~520-46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몰리)일몰	방실일몰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시천면	내대리	세석길 217-573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삼장면	유평리	평촌유평로 140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화개로 1282-214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로 373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865-13~1438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남대리) *영부로 1028-10은 제외 영부로 890번길 17~236(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경북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현실낫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335~635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319
		수비면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본신리)번동		본신로 95-3~348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직천길 666 ~ 688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봉화군		(고산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매화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84~240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충북	충주시	양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슈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65~2275, 호반로1길
			단돈리	호반로 2686~2866, 호반로3길 64
			방흥리	호반로 2408~2471
			진목리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61~62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2리)장선이	장선길 293-2~299
		복수면	(목소리)소량 두만 기왕	두만길 101~124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정리)범어	운정길 63~506-6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52~384
			박실	청운2길 82~125-8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6~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343~437-12
	(용운리)외안날	용운1길 174~202-68, 용운2길 53~89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길 324
전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호곡마을	호곡1길 244~367, 호곡2길 119-59~158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심원	심원길, 심원1길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칠관로 842-1150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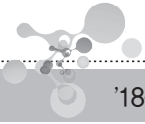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부 록 3

2018-2019절기 국내 유통 예정인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 종류

제조사명	제품명	제조 방법	원료		ml/PFS		특이점		
			제조사	생산국	0.25	0.5	항원	제조	면역 증강제
동아제약(주)	백시플루4가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	원액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4가	유정란	-
SK케미칼(주)	스카이셀플루프리필드시린지	국내제조	SK바이오 사이언스	한국	○	○	3가	세포	-
	스카이셀플루4가프리필드시린지	국내제조	SK바이오 사이언스	한국		○	4가	세포	-
(주)녹십자	지씨플루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	3가	유정란	-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 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4가	유정란	-
(주)보령 바이오파마	보령플루백신V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	3가	유정란	-
	보령플루백신V테트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4가	유정란	-
	보령플루백신Ⅷ주-TF주	원액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3가	유정란	-
	보령플루백신Ⅷ주테트라	원액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4가	유정란	-
보령제약(주)	비알플루텍테트라백신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4가	유정란	-
(주)LG화학	플루플러스티에프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3가	유정란	-
	플루플러스테트라 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4가	유정란	-
(주)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PF주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	○	3가	유정란	-
	코박스인플루4가PF주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	4가	유정란	-
	코박스플루4가PF주	국내제조	녹십자	한국		○	4가	유정란	-
사노피 파스퇴르(주)	박씨그리프주	완제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	3가	유정란	-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완제수입	사노피 파스퇴르	프랑스		○	4가	유정란	-
글락소스미스 클라인(주)	플루아릭스테트라프리필드시린지	완제수입	GSK	독일		○	4가	유정란	-
일양약품(주)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	3가	유정란	-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	국내제조	일양약품	한국		○	4가	유정란	-

* 제조사의 공급 계획변경 및 식약처 국가검정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부 록 4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재분배 매뉴얼



〈목적〉 기관별 백신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원활한 백신 공급 및 사업 종료 시 폐기되는 백신 최소화**를 위함

□ **백신 재분배 시기**

- 접종률 50% 이상 달성시 총 공급된 수량의 70% 이상 잔량을 가진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분배 시작
- 60% 이상 달성시 잔량 60% 이상인 의료기관 실시
- 70% 이상 달성시 잔량 50% 이상인 의료기관까지 재분배 확대

□ **기관 간 재분배 방법**

- 보건소-의료기관, 의료기관-의료기관 간 재분배
 - 백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의료기관 간 재분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보건소 관리자의 관리 하에 의료기관 간 백신 재분배 가능
 - (재분배 관리자) 의료기관이 소속된 지역의 보건소 백신관리 담당자
 - (의료기관 요청 기준) 최근 일별 접종건, 잔여 백신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 수량 신청
 - (보건소 조정 승인 기준) 지역내 접종률 및 미접종자 현황, 요청한 기관의 총 접종건수 및 최근 일별 접종건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요청량 범위 내에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백신 여유물량을 고려해 조정하여 승인
 - * 추가 공급 백신 1순위: 보건소 보유 국가사업분, 2순위: 타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수량

☞ 보건소의 백신 재분배 협조 요청에 비협조적인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패널티 적용

*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p.29)' → 4. 시·도 및 시·군·구의 역할 업무 → 가. 예방접종업무 위탁 계약 관리 → 6) 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

* 올해부터 운영 예정인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백신 재분배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동일 시·도 내 보건소-보건소 간 재분배
 - 관할의료기관의 백신을 포함한 보건소 백신 과부족 예상시 실시
 - (재분배 관리자) 시도 담당자
 - (요청기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요청
 - * 지역상황: 지역내 접종률, 미접종자, 타지역 주민등록 인구의 관할내 접종(요양병원, 보훈 병원 등), 최근 접종일별 접종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잔여백신량
 - (처리기준) 시도 담당자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백신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소의 백신을 요청한 보건소로 재분배

- 동일 시·도 외 보건소-보건소 간 재분배
 - 동일 시도 내에 지역상황을 적용하였을 때 재분배 가능한 보건소가 없을 경우 타 시·도의 보건소에서 재분배
 - (재분배 관리자)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 (요청기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 담당자가 보건소 요청을 확인 후 요청
 - * 지역상황: 지역내 접종률, 미접종자, 타지역 주민등록 인구의 관할내 접종(요양병원, 보훈 병원 등), 최근 접종일별 접종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잔여백신량
 - (처리기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각 보건소별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백신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소의 백신을 추가요청한 보건소로 재분배

- 조달계약 시 ‘물품구매 특수조건’에 명시된 백신 반품기준에 따라 회수 예정이므로, 과다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사전에 백신이 부족한 타 기관(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 재분배 조치



□ 백신 운송 시 주의사항

○ 재분배를 위한 백신 품질 확인

- 재분배 대상 백신이 적절한 조건에서 보관되었다는 확인·기록이 있고, 용기 및 개별 포장에 파손되지 않는 등 백신의 품질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재분배 가능

○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의 관리하에 콜드체인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운반

※ 관련 법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1]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3]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 등 [☞] 허가사항에서 정한 **저장온도가 항상 유지되도록 보관**하여야 함
- 그 외 사항은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부록 3. 백신 보관 지침>, 「백신 보관 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2015년 11월 발행)」 참고



부 록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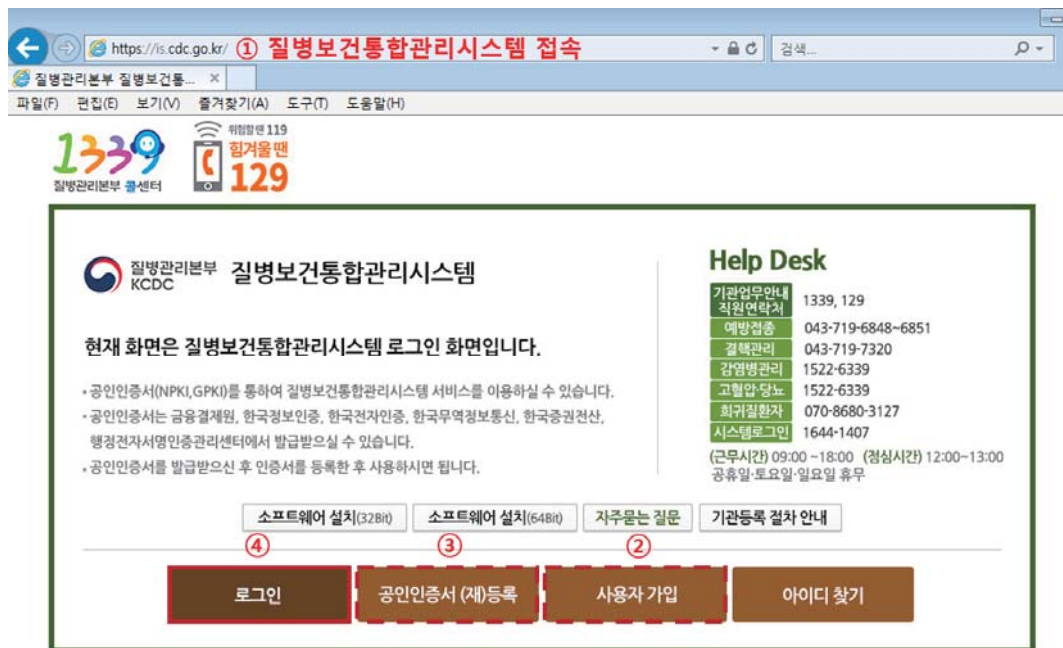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신청 매뉴얼(의료기관)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사용을 위해 사이트 접속 후 ‘사용자가입’ 및 ‘인증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가입 문의: ☎1644-1407(정보화 T/F)

※ 사용자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 후 관할 보건소로 예방접종관리 업무에 대한 사용자권한을 신청해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c)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그림 1.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② ‘사용자가입’을 클릭 후 팝업 창에서 가입양식 작성 및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후 ‘저장’을 클릭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시 '저장' 버튼 활성화

※ 이름은 반드시 실명으로 입력해야 함

사용자 가입

*이름(본인성명) * 이름(본인성명)은 한글로 최대 5자리 이내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아이디

*기관명 (기관, 병의원, 약국 등) :: 기관유형선택 ::

*본인확인 * 휴대폰이 없는 사용자는 HELPDESK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관(부서) 전화번호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숫자만 입력하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 안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용자 중복 가입 방지, 불법적 사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활용
 2. 수집하려는 항목 : (필수)이름, 아이디, 기관명, 휴대폰번호 (선택) 기관(부서) 전화번호, 재직(재인)증명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해야만 회원가입 가능)

〈그림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가입〉

③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관등록절차안내'에 따라 팩스 송부 후 의료기관이 등록되면 사용자가입을 완료합니다.

※ FAX 043-719-7069, ☎ 1644-1407

※ 팩스 송부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여부 확인

1339 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질병관리본부 KCDC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현재 화면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입니다.

- 공인인증서(NPK, GPK)를 통하여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증권전산,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 인증서를 등록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32Bit) 소프트웨어 설치(64Bit) 자주묻는 질문 **기관등록 절차안내**

Copyright(c)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기관등록절차안내

사업자등록증에 전화번호, 요양기관코드를 추가 기재 후 팩스로 송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내역)란에 추가 기재

2.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팩스로 송부 (FAX: 002-470-0300)

3.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확인한 후 기관 등록 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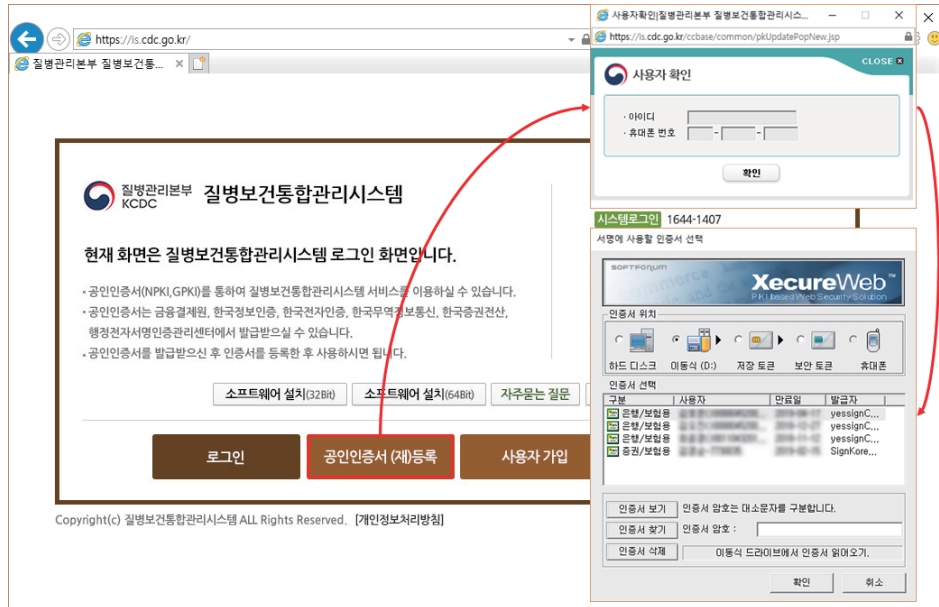
4. 기관 등록 완료 문의 : HELPDESK

〈그림 3. 기관등록절차 안내〉



④ 사용자 가입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2015년 2월 25일부터 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하며, 반드시 개인인증서를 등록



<그림 4.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인증서등록>

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림 5.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부 록 6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 업무권한 신청 매뉴얼(의료기관)

1. IR 의료기관 사용자 권한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예방접종관리업무 사용자 권한’ 신청 절차

우측상단 권한/부가정보관리 → 예방접종업무 권한 상태 조회 → 승인가관(관할 보건소) 선택
 →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 → 권한승인 후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가능
 ※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완료 후 관할 보건소에서 참여 의료기관 승인 가능

- ① 시스템을 처음 사용하는 의료기관일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예방접종 관리업무에 대한 사용자 권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우측 상단 ‘권한/부가정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1.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1)〉

- ② ‘권한 및 부가정보 관리’ 메뉴의 권한그룹선택에서 예방접종을 선택하거나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항목이 보입니다.



〈그림 2.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2)〉



- ※ 교육이수를 위해 [교육관리 User] 권한도 신청 필요. 교육과정 수료내역은 개인별(성명기준)로 관리되니, 회원가입시 **교육생 본인 실명으로 반드시 기입**하기 바람. 과정 수강중 이거나 수료후에는 성명 변경 불가.



〈그림 2-1. 교육관리 User(학습자)〉

- ③ 예방접종관리 User(IR의원)의 ‘승인기관’을 클릭하여 관할 보건소를 선택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권한신청이 완료됩니다. 보건소에서 권한신청을 승인하면 권한상태가 ‘신청중’에서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그림 3.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신청(3)〉

- ④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이 승인되면 로그인 시 메뉴보기에서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예방접종관리 User 권한 승인 후 메뉴>

- ⑤ 초기 '예방접종관리'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부가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이 완료되어야 관할 보건소에서 위탁사업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관리' 메뉴 클릭 시 부가정보 입력화면으로 자동 연동되며, 저장이 완료되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가정보 : 기관 종별구분, 사용 의료정보시스템명, 예진의사명, 접종자명, 기관 E-mail 등

<그림 5. 의료기관 부가정보 입력>



부 록 7

노인 인플루엔자 시스템 매뉴얼(의료기관)

어린이 인플루엔자 지원 사업 관련 시스템 매뉴얼은 「2017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1. 예방접종관리업무 계약 신청

1.1 의료기관 정보 및 계약 안내

- 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신청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 메뉴에서 의료기관 기본정보 및 기관인증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림 1. 의료기관 계약신청〉

1.2 기관인증서 등록 및 갱신

위탁계약 신청 전 기관인증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계약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② '기관인증서 정보'에서 전자계약신청 및 의료기관점검 시 사용될 기관인증서 등록여부 및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인증서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를 등록하고,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 [인증서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변경합니다.

* 기관인증서 등록 시 의료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등록 된 인증서만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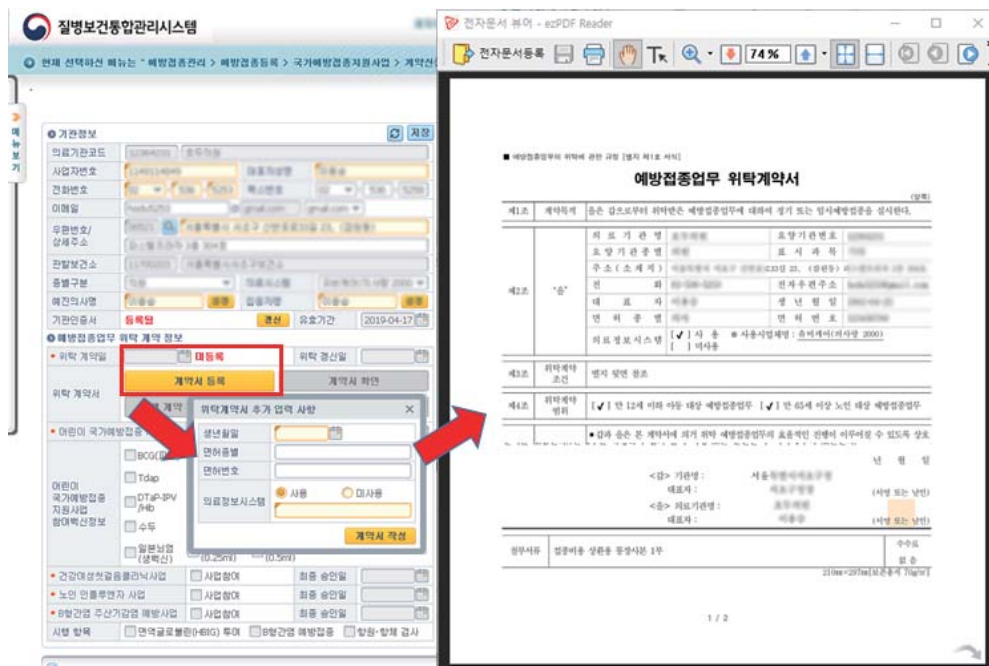
〈그림 2. 의료기관 기관인증서 등록)변경예정



1.3 계약서 작성

- ① [계약서 작성] 버튼 클릭하면 위탁 계약에 필요한 추가 입력 사항을 등록 후 ‘예방접종 위탁계약서’ 화면이 생성되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2017. 10. 19. 이전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계약은 3년으로 이전에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7. 10. 19. 이후 위탁계약기간 5년으로 변경됨)
- ②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 ③ 등록 완료 후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보건소에서 승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④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시면 [계약서 확인] 버튼이 활성화 되며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계약서에 승인 서명을 완료하면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성립



〈그림 3.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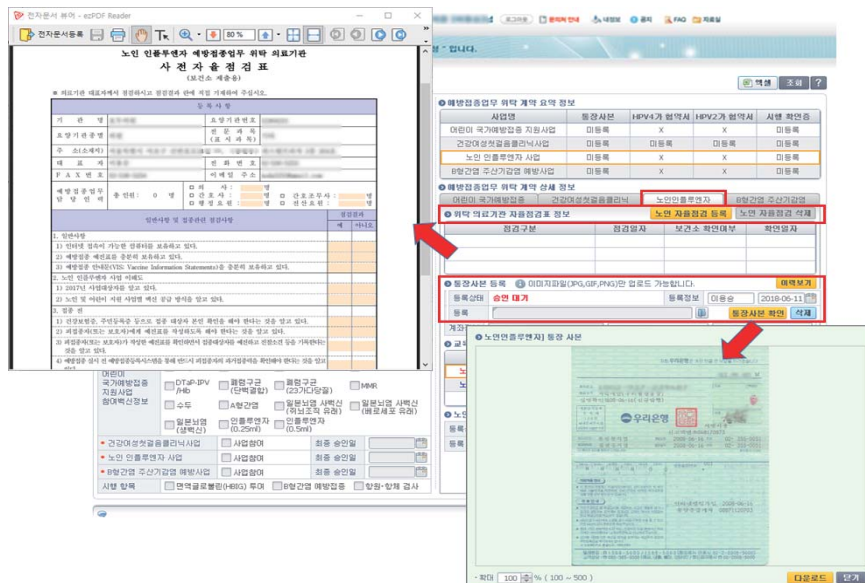
1.4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 및 통장사본 등록

- ①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국가예방접종사업 계약체결 후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우측 화면에서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탭을 선택한 후 [노인 자율점검 등록] 버튼 클릭 하면 해당 사업의 자율점검 전산등록 화면이 생성되며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율점검 내용을 작성 하고, (서명)을 클릭하여 전자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자율점검표’로 대체 가능합니다.

- ④ 자율점검표 등록을 완료하면 정보 내역에 “미확인” 상태가 되며 관할보건소에서 확인을 하면 “확인완료” 상태로 변경 됩니다.
- ⑤ 통장사본 등록은 파일 모양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보관하고 계신 통장사본 이미지를 선택하여 등록하며, 통장사본 등록 후 [통장사본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통장사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통장사본 이미지는 5MB 이하의 파일 확장자(JPG, PNG, GIF)만 허용합니다.



〈그림 4. 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 및 통장사본 등록〉



1.5 교육수료정보 확인

① 교육수료증은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로, '교육수료정보' 항목에서 수료번호를 입력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여부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교육이수내역을 등록합니다.

- * 교육수료증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다운로드(PDF파일)하여 상단에 위치한 수료번호(숫자10자리)를 입력하고 [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수료여부를 검증
- * 신규 계약시 기본교육 이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재계약시 보수교육 이수
-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보수교육으로 이수가 완료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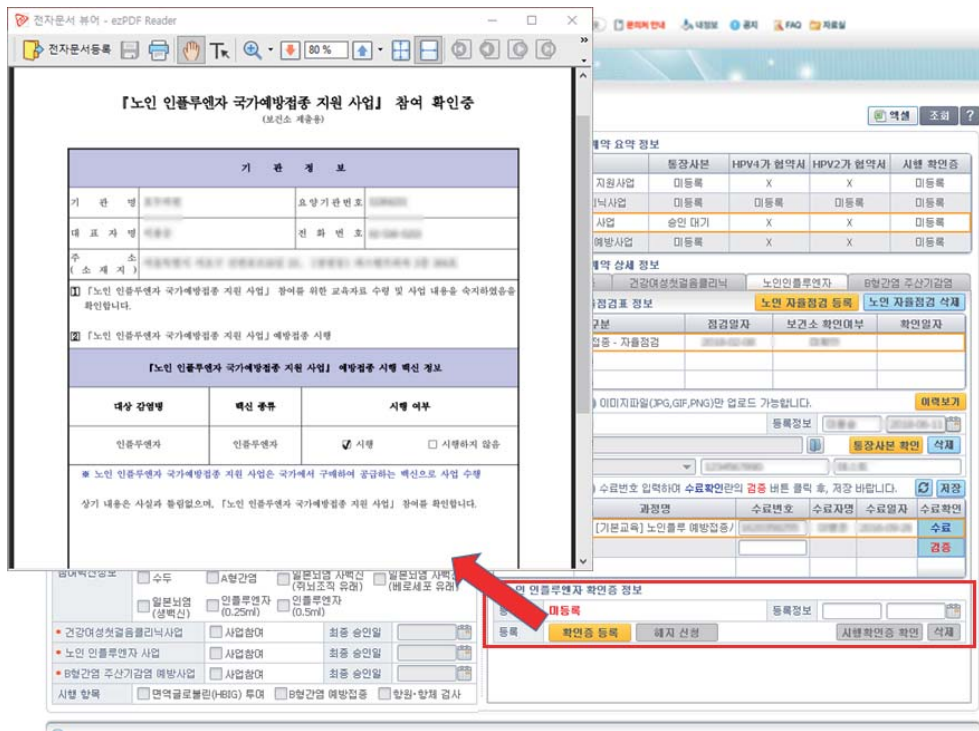


〈그림 5. 의료기관 교육수료 등록 및 확인〉

1.6 사업 참여확인증 작성

- ① [참여 확인증 등록] 버튼 클릭하면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화면이 생성되며, 참여 확인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참여 확인증 등록 시 제출(자율점검표, 통장사본, 교육이수)해야 하는 서류가 미등록 된 경우 진행 불가합니다.
- ② 참여 확인증을 작성하고, 하단의 (서명 또는 날인)을 클릭하여 서명 후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참여 확인증 작성이 완료 됩니다.
- ③ 등록 완료 시 “승인대기” 상태가 되며 관할보건소에서 승인을 하면 “승인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 ④ 업로드가 되어있으면 [참여 확인증 해지], [시행 확인증 확인], [삭제] 버튼이 생성되며, 각각 노인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중단, 등록된 시행확인증 확인, 승인 전 시행확인증 삭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참여 확인증 승인을 완료하면 노인 인플루엔자 사업 참여



〈그림 6.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참여 확인증〉



1.7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정보 확인

- ①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최종 사업 참여 확인은 계약관리 화면 좌측에 하단 최종 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업 참여와 비용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 ② 최종 승인일은 참여 확인증 보건소 승인과 동시에 적용 됩니다.



〈그림 7. 의료기관 예방접종업무 참여 사업 정보 확인〉

2. 백신관리

2.1 예상수요량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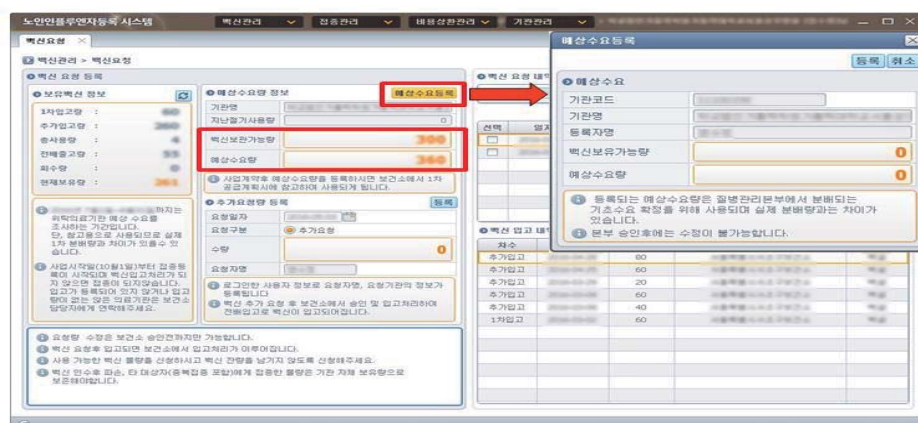
- ① 노인인플루엔자 계약이 완료되면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의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클릭하여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실행합니다.
- ③ 상단 메뉴 ‘백신관리’ > ‘백신요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8. 백신요청〉

- ④ [예상수요량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수요등록 팝업창이 나타나며 ‘백신보유가능량’과 ‘예상수요량’을 입력하시고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 보건소 승인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림 9. 백신예상수요량 등록〉



2.2 추가 수요 요청

- ① 사업시작일(2017년9월26일) 이후부터 추가 수요 요청이 가능합니다.
- ② 먼저 추가 요청 필요시 추가수요량 등록란에 수량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우측 상단의 백신 요청내역에 추가됩니다.
- ③ 보건소 승인 후 백신 입고가 이루어지면 우측 하단의 백신입고내역에서 입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추가요청량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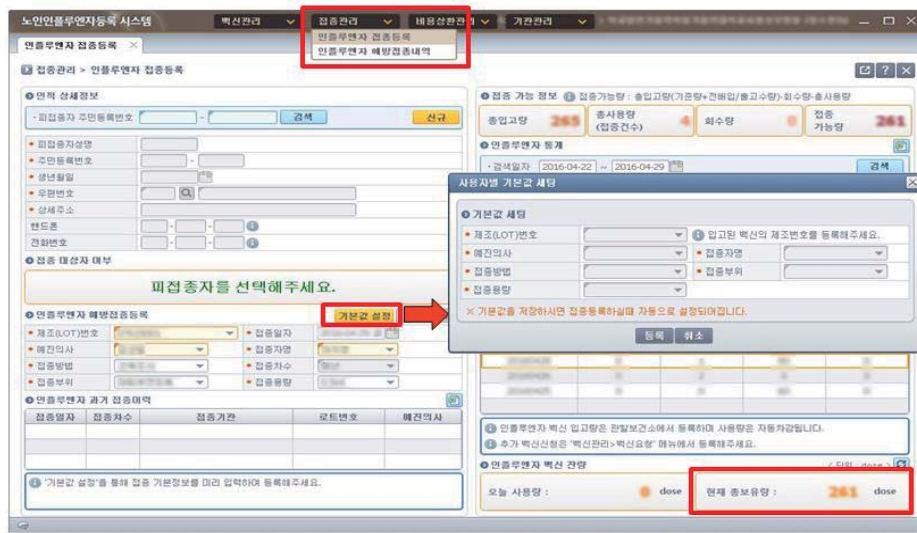
3. 접종관리

3.1 기본값 등록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 접종등록’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백신이 입고완료 후 화면 우측하단의 현재 총보유량이 존재해야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먼저 [기본값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별 기본값을 설정하여 접종등록 시 편리하게 등록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접종 기본 값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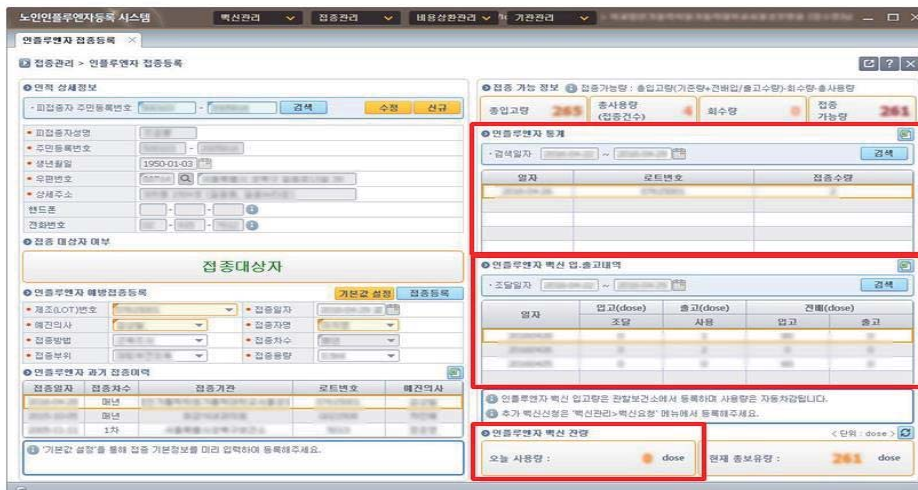
3.2 접종등록

- ① 접종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 ② 조회된 인적의 ‘접종대상자 여부’칸에 피접종자의 접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과거접종이력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③ 조회되지 않는 인적 정보는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인적 정보를 등록하며 인적 정보 수정 시에는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접종 가능 대상자면 [접종등록]버튼이 활성화되며 접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⑤ 기본 설정된 값이 등록정보란에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있으며, 접종 정보 및 인적 정보 확인 후 [접종등록]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그림 12. 인적 및 접종 등록〉

- ⑥ 접종등록이 완료 되면, 화면 좌측하단의 ‘오늘사용량’이 업데이트되며 ‘현재 총보유량’에서 자동차감 됩니다.
- * 접종등록시 자동으로 비용상환 신청이 되며, 행정부 검증을 거쳐 보건소에서 신청접수하게 됩니다.
- ⑦ 기관별 통계 및 입출고 내역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조회일자별로 선택하여 조회 가능합니다.



〈그림 13. 접종 등록 및 각종 내역 화면〉

3.3 접종등록내역

-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접종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② 접종기간 및 구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해당기관에서 접종기간에 접중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그림 1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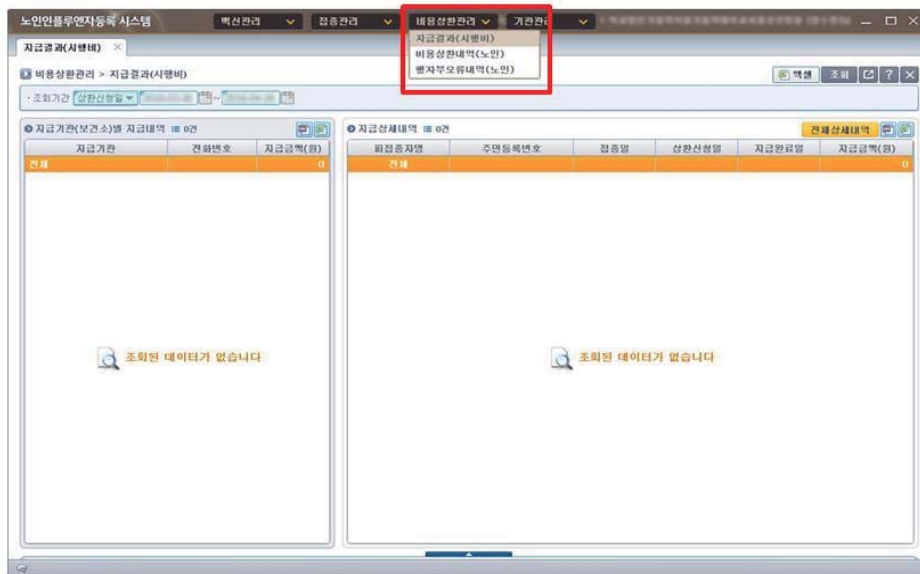


4. 비용상환관리

4.1 지급결과

-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비용상환관리’ > ‘지급결과(시행비)’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접종 등록 후 인적 관할 보건소 비용상환 지급 완료된 건이 조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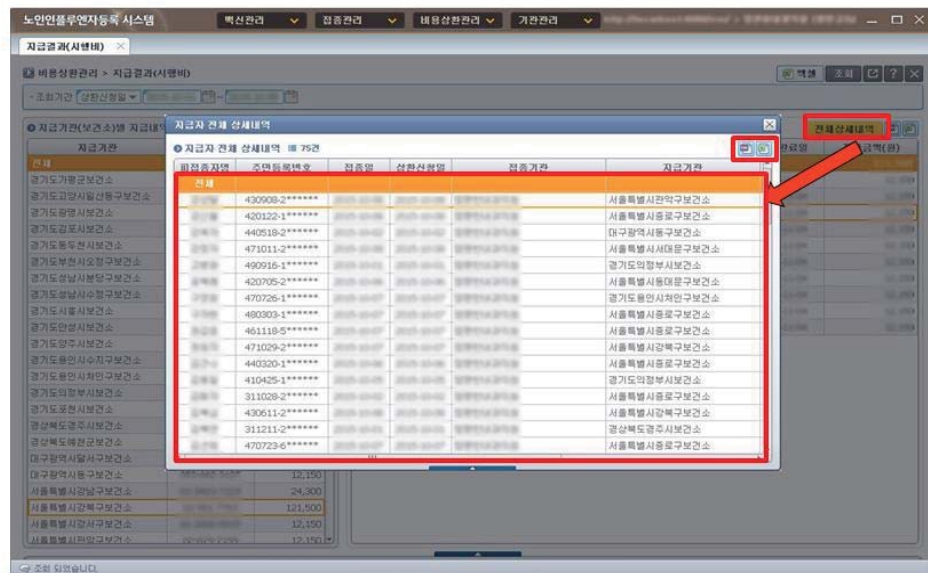
〈그림 15. 지급결과(시행비) 화면〉

- ② 조회기간을 상환신청일 또는 지급 승인 일을 기준으로 설정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화면 왼쪽 내역에 보건소별 지급된 내역이 나타납니다.
- ④ 화면 왼쪽 내역의 보건소를 더블 클릭하면 우측 지급상세내역에 선택한 보건소의 상세 지급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림 16. 지급결과(시행비) 조회〉

- ⑤ [전체상세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기간의 전체 지급 상세 내역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⑥ 팝업창 우측 상단의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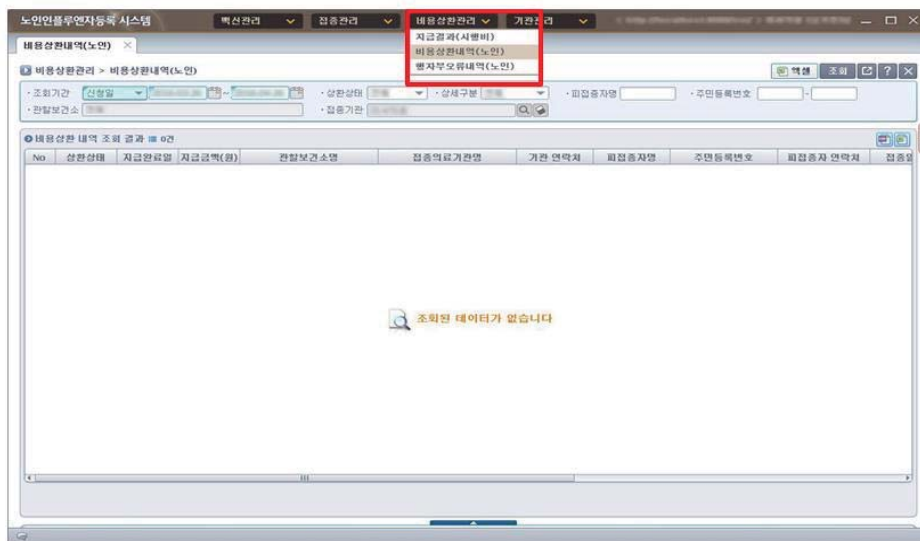
〈그림 17. 지급결과(시행비) 전체 조회〉



4.2 비용상환내역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비용상환관리’ > ‘비용상환내역(노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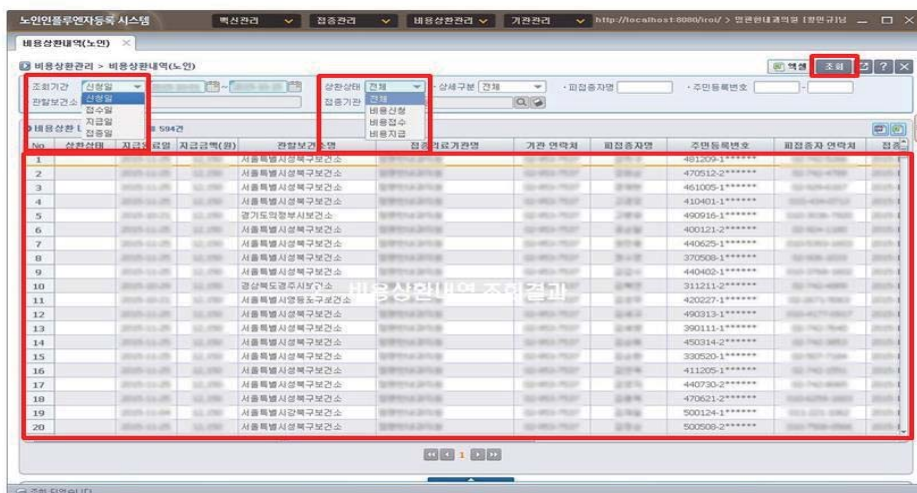
*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내역을 조회함.



〈그림 18. 비용상환 메뉴 선택〉

② 조회할 기간 및 상환상태를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아래 내역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비용상환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림 19. 비용상환 내역 조회〉

4.3 행사부오류내역

①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의 상단 메뉴 ‘비용상환관리’ > ‘행사부오류내역(노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행사부 확인 결과 오류로 확인된 내역을 조회함.



<그림 20. 행정안전부 오류내역 메뉴 선택>

②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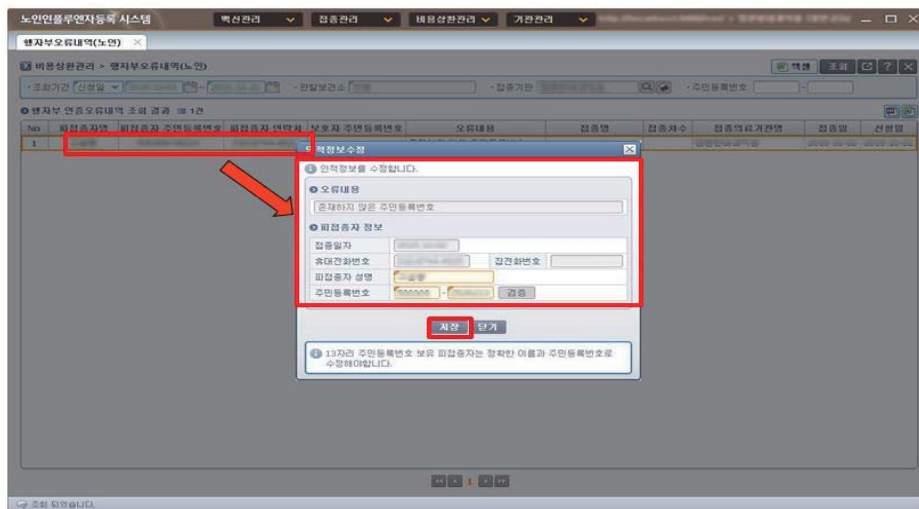
③ 아래 내역에 행사부 확인결과 오류로 확인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그림 21. 행정안전부 오류내역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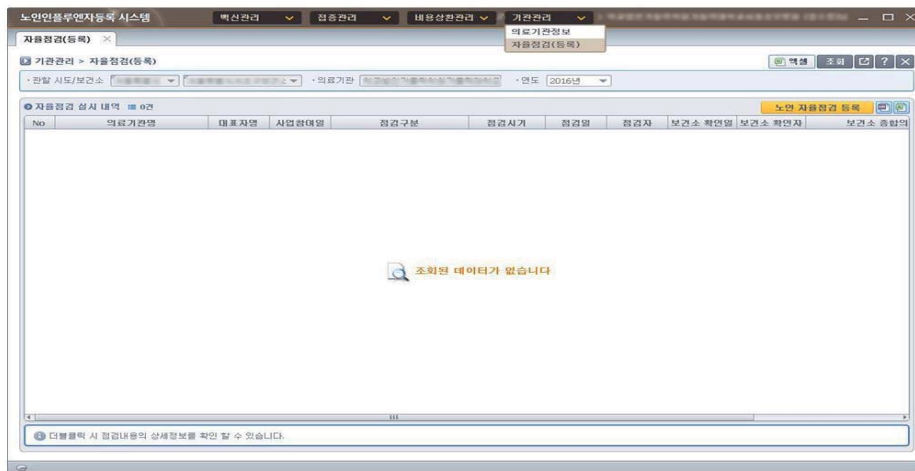
- ④ 행자부 오류내역을 수정하기 위하여 해당 오류 내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 ⑤ 인적 정보 수정 창에 오류내용을 확인한 후 피접종자의 정보를 수정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 * 이후 수정된 내역은 다시 한 번 행자부 확인을 거친 후 지급 처리됩니다.**
- ⑥ 행자부 오류내역 수정 없이 신규로 재등록 시 백신수량의 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행자부 오류내역 발생시 수정 또는 삭제 후 신규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22. 행정안전부 오류내역 인적수정〉

5. 기관정보 변경 및 자율점검 관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사용자정보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에서 ‘의료기관점검관리’ 업무가 가능합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예방 접종 관리’ > ‘예방접종등록’ > ‘노인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 상단 메뉴보기에서 ‘기관관리’ > ‘의료기관정보’ 메뉴로 이동하여 의료기관 변경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보기에서 ‘기관관리’ > ‘자율점검(등록)’ 메뉴로 이동하여 의료기관자율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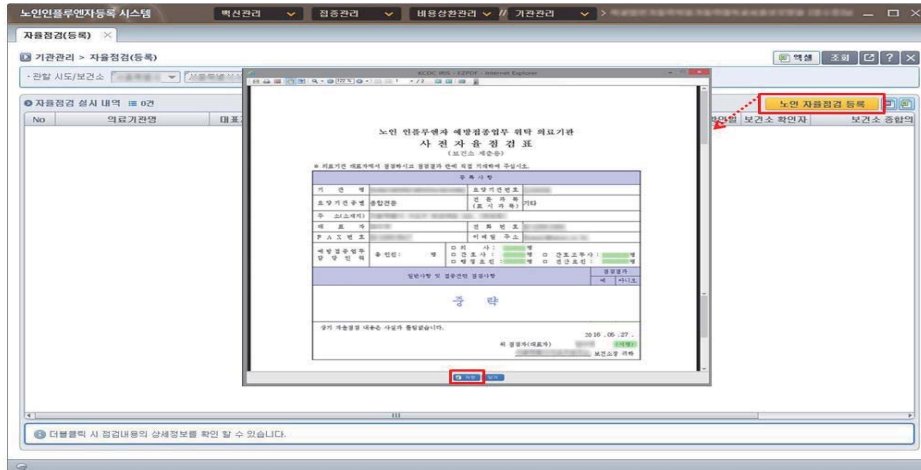


〈그림 23. 자율점검 메뉴 선택〉



5.1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자율점검

- ① ‘자율점검’ 메뉴 상단 [노인 자율점검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②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 의료기관 사전자율점검표’ 팝업화면이 생성됩니다.
 - ③ 점검내용 작성 후 (서명)을 클릭하여 기관인증서로 서명을 완료합니다.
 - ④ [전자문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점검표 제출이 완료되며, 점검내역 리스트에서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⑤ 리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제출한 점검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⑥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은 매년 사업 시행 전 ‘사전 자율 점검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사전 자율점검표 제출기한 : 계약년도에는 계약시, 그 외는 8월말까지
- *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자율점검표’로 대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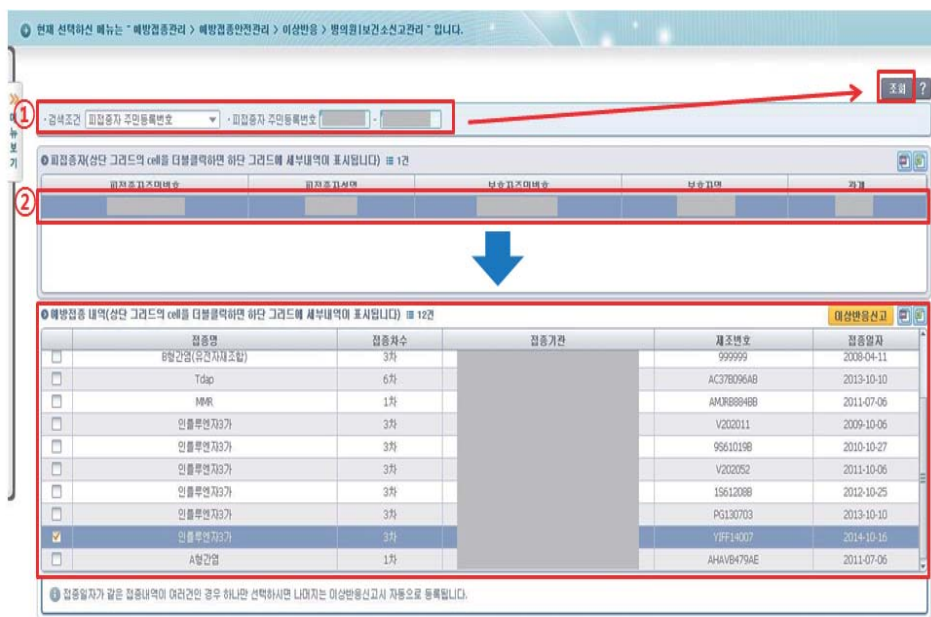


〈그림 24. 노인인플루엔자 사전점검 등록〉

6. 이상반응 전산관리

6.1. 이상반응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신고



〈그림 2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 화면 1〉

- ① 아래의 검색조건 중 하나를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 ② 피접종자 검색결과에서 해당 피접종자 클릭 → 해당 접종내역 클릭 → [이상반응 신고] 버튼 클릭



〈그림 2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병의원/보건소 신고 화면 2〉

- ① 이상반응환자 인적정보 확인
- ② 접종기관정보 확인
- ③ 예방접종정보 확인
- ④ 이상반응 신고기관정보 확인
- ⑤ [이상반응 종류 및 진행상황 입력버튼] 클릭
 - 이상반응 종류와 진행상황을 반드시 체크
- ⑥ 입력내용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 ※ 인적정보, 접종기관정보, 예방접종정보, 신고기관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접 입력함

부 록 8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내 예방접종 전문교육 학습자 매뉴얼

1. 회원가입

-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 사용 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후 학습자 권한 신청을 합니다.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메뉴보기 → 권한/부가정보관리 →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신청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문의: ☎1644-1407(정보화 T/F HelpDesk)
 - ※ 회원 가입시 학습자 본인의 실명과 직군, 면허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수료증 내 이름과 직군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대로 수료증이 출력되며 과정을 수강한 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니 주의합니다.

2. 로그인 하기

-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을 통해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승인 요청한 ‘교육관리 User(학습자)’ 권한 승인이 완료되면,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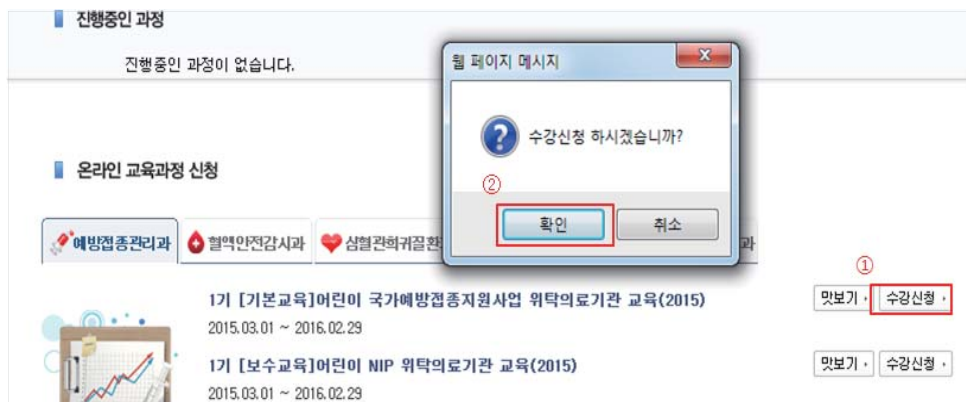
3. 수강신청 하기

① 로그인 한 후의 메인 화면입니다. ‘예방접종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소속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따른 신청 가능한 교육과정이 화면하단에 표시되며, 각자 수강할 과정에 대해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예로, 아래 화면에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로그인 한 경우, 신청 가능한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교육신청 전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확인 필요



② ①‘수강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메시지 창이 뜨며, ②‘확인’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③ 신청한 교육과정은 ①‘진행중인 과정’에서 확인되며, ②‘강의실입장’을 클릭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 ④ 또는 다음 화면과 같이 상단의 ‘수강과정’메뉴를 클릭한 후,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4. 학습하기

① ‘강의실 입장’ 또는 ‘학습하기’를 클릭 후 새로 열린 아래 창에서 ①‘강의실 입장’을 클릭합니다.

※ ②: 웹 페이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강의실 홈 화면은 강의수강이 끝나기 전까지 닫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예) 2016년 교육과정 화면



② ‘강의실 입장’ 메뉴의 화면입니다. 각 회차 ‘학습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의 경우 순차적으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 도중 e강의실 창을 닫을 경우 진도율이 정상적으로 체크되지 않아 수료완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교육 과정의 교육자료는 각 과정의 '자료실' 메뉴에서 일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③ 2016년 교육과정 1회차 ‘2016년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학습화면입니다.

- ①화면 왼쪽메뉴에서 해당 차시의 소메뉴와 진도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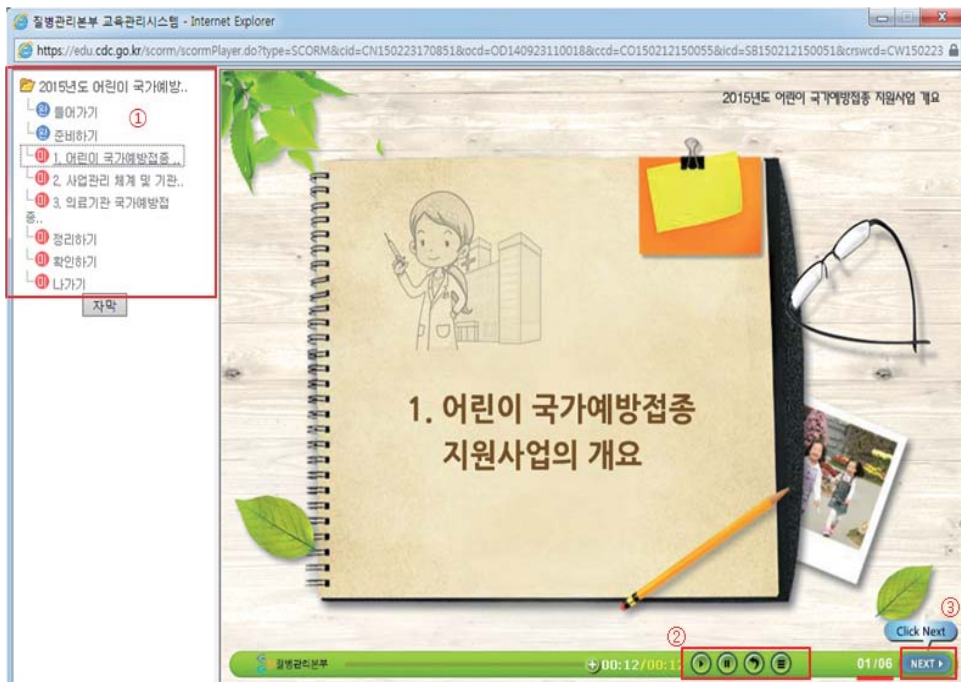
완 : 해당 페이지를 끝까지 들은 경우

미 : 수강중이거나 미완료한 경우

- ②재생, 일시정지, 다시보기, 자막보기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③화면과 같이 ‘Click Next’ 표시가 나타나면 'NEXT'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왼쪽의 소메뉴 중 다음 진행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모든 회차(10회차)를 수강하게 되면 ‘수료’처리가 됩니다.



※ 01/06 : 총 6페이지 중 1페이지를 의미함



5. 수료 확인하기

- ① 교육시스템 홈 화면 상단의 ①‘수료증 출력’ 메뉴를 클릭합니다. 수강과정 화면은 ‘진행중인 과정’과 ‘수강종료 과정’으로 구분되며, ②‘수강종료 과정’에서 수료여부를 확인 및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이 발급되는 과정의 경우, 아래 화면에서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질문하기

- ①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한 사항(진행률 오류 등)이 있을 경우, 게시판(묻고 답하기)에 글을 남기시면 확인 후 처리해 드립니다.

※ 교육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043-719-6848~6851

부 록 9

백신 보관 지침



I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권고사항

가. 백신 접종에 관련된 지침서 준비 및 비치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지침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야 한다.

- 백신 보관과 취급, 접종을 책임지는 사람과 예비 인원에 대한 연락처
- 지역 보건당국의 연락처
- 백신 생산 회사 혹은 백신 공급 업체 연락처
- 백신 보관용 냉장고를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회사 연락처
- 백신 냉장고에 사용하는 온도계의 회사 연락처
- 백신 보관과 취급, 접종을 책임지는 사람과 예비 인원의 역할 분담
-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방법에 대한 정리된 내용
- 백신 보관 온도에 대한 내용
- 백신 보관 기구에 대한 내용
- 백신 보관 냉장고에서 백신의 위치
- 백신의 보관과 취급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 백신 재고 관리에 대한 내용
- 백신 이송과 백신을 회사나 백신 공급 업체에서 받을 때 절차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방법에 대한 내용
- 백신 접종 후 조치 및 주사기 등의 접종과 관련된 물품의 관리에 대한 내용
- 사용 백신에 대한 설명서



나. 백신 접종에 있어 책임 관리자 선정

백신을 주문, 관리 및 접종하는 책임자를 정해야 하고 이 책임자는 백신 관리 및 접종에 관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새로운 백신의 도입 시 사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내에는 같은 종류의 백신이나 제조사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백신간의 교차 접종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책임자 유고시를 대비하여 미리 예비 인원들을 확보하여 교육해야 한다.

백신 책임 관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를 하루에 2회 점검하고 기록한다.
- 백신 보관이 잘못되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한다.
- 백신의 보관과 취급에 대한 기록을 한다.
- 백신 냉장고 안의 백신들 중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이 냉장고 내 앞에 위치하도록 하고 백신의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 백신의 주문
- 백신 공급 업체에서 의료기관까지 백신 이송과정에 대한 검증, 백신 인수, 보관 및 관리를 책임진다.
- 백신 보관 이상 시 가장 먼저 조치를 하도록 하며, 만약 유고시에는 다른 예비 인원들이 응급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다.
- 백신 냉장고 온도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자동 온도 조절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한다.

II 백신 보관 시 필요한 기구들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 백신 보관 감시체계
- 비상 상태를 대비한 백신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를 대비한 자가발전기 등 설치

가. 냉장고

1. 기종

백신만 보관하는 냉장고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냉장고와 냉동고가 분리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가정용 냉장고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백신 냉장고 혹은 의료 전용 냉장고 중에는 냉장고문이 유리로 된 것이 있는데 일부 백신-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 virus, HPV),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Measles, Mumps, Rubella, MMR), 로타바이러스 백신 (Rotavirus), 수두백신 (Varicella)은 일광에 노출되면 백신의 역가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단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음식물, 약품들과 같이 보관을 해서는 안된다.



2. 냉장고 위치

일반 가정용 냉장고와 같이 통풍이 잘되는 곳, 직사광선이 없는 곳, 건물의 벽에서 1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바닥에서는 2.5~5cm의 간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직사광선 외부의 온도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창문부근에 두어서는 안 된다. 냉장고 뒷면에 코일이 있는 경우는 벽과 10cm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도록 한다. 좁은 공간에 두어서는 안되고 다른 가전제품과 같이 두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전기 콘센트도 다른 것과 연결하여 사용하지 말고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3. 냉장고의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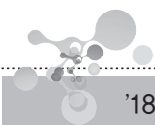
- 1) 냉장보관 : 백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보관 온도를 준수해야 하나 대개의 백신들은 2~8℃에서 보관해야 하고, 온도 변화의 안정성을 위하여 5℃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개별 백신의 보관에 관한 지침은 백신설명서를 참조한다.
- 2) 백신 냉장고의 온도 조절은 책임자가 해야 하며, 냉장고의 온도 변화가 있을 시, 혹은 냉장고 온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백신 냉장고 안에 있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조절한 후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한다.
- 3)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자주 하는 것이 좋으나 적어도 하루에 2회를 하는데, 아침에 일과 시작 시에, 일과를 마친 후에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온도를 기록을 해둔다. 기록한 온도의 보존기간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 2항’에 따라 2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 4) 새로운 백신 냉장고를 구입했거나 백신 냉장고를 수리 후 다시 사용할 시에는 바로 사용하지 말고 냉장고 온도를 2일 동안 측정 후 사용해야 한다.

4. 냉장고 사용 시 주의점

- 1) 가능하면 문을 자주 열지 않는다.
- 2) 다른 약물, 혹은 음식물과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 3)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냉장고 문의 도어가스킷에 새는 것이 없는지, 문의 기밀기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5.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이용한 온도 조절은 백신 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6. 백신 보관용 냉장고는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한다.



나. 온도계

1. (온도계의 종류) 수은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자동온도기록장치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2. (온도계의 위치) 냉장고 중간 부분에 위치하도록 하며, 온도계가 냉장고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온도계의 경우 감지기가 냉장고 벽에 역시 닿지 않도록 둔다.
3. (온도계의 관리) 백신 냉장고에 사용되는 온도계는 표준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표준 온도계는 1년에 한 번씩 국가 인증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보정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온도계의 경우 여분의 건전지를 온도계에 부착 해둔다.
4.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에 알람이 울리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
5. 국내에서 나오는 일부 냉장고의 경우 온도계가 냉장고 본체에 붙어서 나오는데 이때에는 표준온도계를 구입하여 냉장고에 부착된 온도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다. 비상 상태를 대비한 백신을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백신 보관에 갑작스런 이상이 생겼을 때 백신을 이송할 때 필요한 것들로 아이스 팩, 아이스박스, 비닐 완충제, 여분의 온도계 등이 있어야 한다.



Insulated containers.



Refrigerated/frozen packs.



Dry Ice.



Place bubble wrap, crumpled brown packing paper, or Styrofoam peanuts between the refrigerated/frozen packs and the vaccines.



Place the thermometer next to the vaccine but not in contact with the refrigerated/frozen packs.

Refrigerated/
frozen packs.
Bubble wrap.
Vaccines.
Thermometer.

〈그림 1〉 백신을 이송할 때, 백신 보관 냉장고의 갑작스러운 이상, 혹은 냉장고 청소 등으로 일시적인 백신 보관이 필요할 때,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아이스팩과 백신이 직접 닿지 않도록 기포가 들어 있는 비닐 포장재 등이 들어있어야 한다. 백신 이수 시에 의료기관의 책임자는 위와 같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드라이아이스는 냉동이 필요한 백신을 이송할 때에 사용한다.

Ⅲ 백신의 주문과 인수, 재고 관리 시 주의사항

가. 백신 주문 간격

1. 백신은 약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주문하는 것이 좋으며, 재주문은 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백신을 납품받아 보관하면 백신 냉장고 내부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백신은 냉장고 용량에 50%정도 차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백신 사용량이 많은 경우는 여러 대의 백신 냉장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2. 백신을 주문 시 빈번한 소량 주문은 지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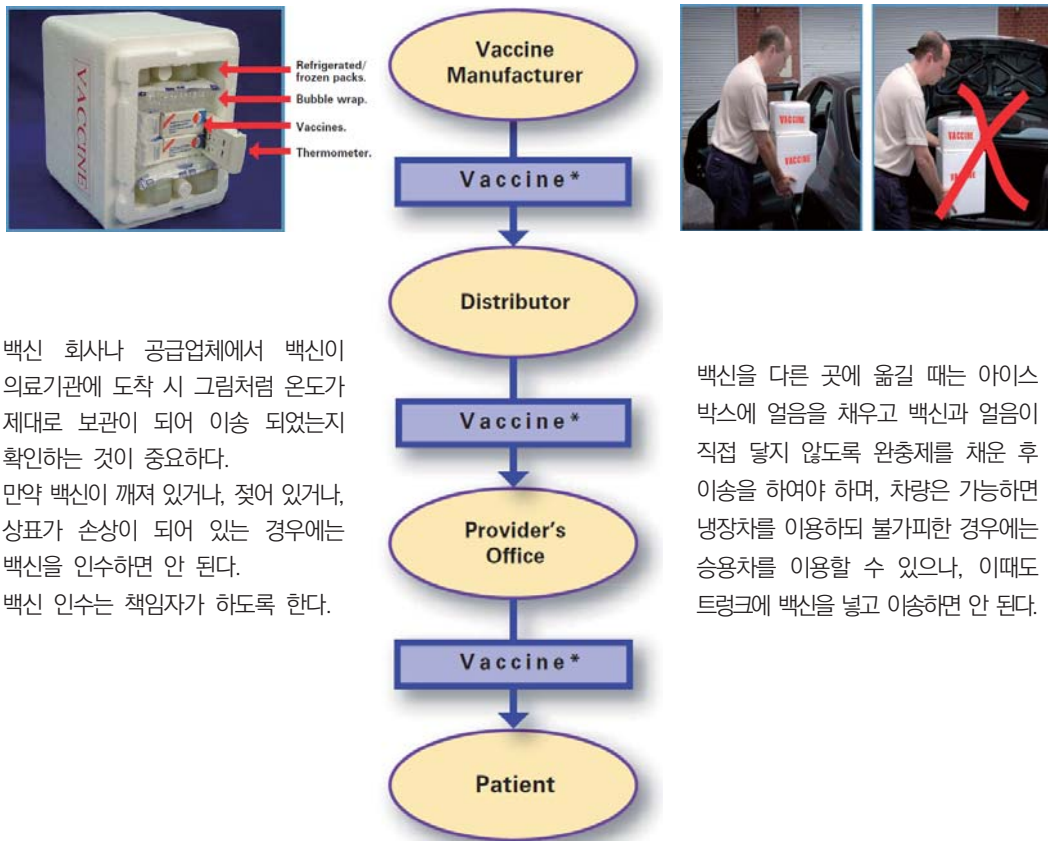
나. 백신 인수 시 주의사항

1. 백신 제조사의 원칙에 따라서 보관과 이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문한 백신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백신을 공급하는 회사나 업체에서 온도를 유지하며 잘 운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확인을 하는 방법은 백신을 운송해온 박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적절한 온도, 운송기간 동안 저온을 유지하는 기구들(아이스팩, 완충제 등)을 확인한다.
4. 백신을 운송해온 상자는 반드시 백신관리 책임자가 개봉을 하도록 하며 만약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예비 인원들이 할 수 있다.
5. 상자를 개봉한 후 주문백신의 수량, 백신 손상 여부를 확인한다.
6. 백신이 물에 젖었거나, 상표가 훼손된 경우, 백신 병이나 주사기가 금이 간 경우에는 백신을 돌려보낸다.
7. 백신 운송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즉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백신 이송을 위한 저온체계

The Cold Chain



백신 회사나 공급업체에서 백신이 의료기관에 도착 시 그림처럼 온도가 제대로 보관이 되어 이송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백신이 깨져 있거나, 젖어 있거나, 상표가 손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인수하면 안 된다. 백신 인수는 책임자가 하도록 한다.

백신을 다른 곳에 옮길 때는 아이스 박스에 얼음을 채우고 백신과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완충제를 채운 후 이송을 하여야 하며, 차량은 가능하면 냉장차를 이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트렁크에 백신을 넣고 이송하면 안 된다.

〈그림 2〉 백신은 백신 생산 공장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접종할 때 까지 적절한 온도(2~8℃)에서 백신회사가 정한 원칙대로 보관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백신을 적절한 냉장용기, 냉동용기에 담아서, 냉장차량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 백신의 재고 관리

최소한 한달에 한번, 백신 주문을 넣기 전에 백신 재고 목록을 작성한다. 백신재고 관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1. 병원에 새롭게 들어 온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2. 사용한 백신과 용해제의 수, 폐기된 백신과 용해제의 수, 손상이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수
3. 현재 보관하고 있는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수
4. 우선 사용해야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파악
5.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파악
6. 주문된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에서 반품을 할 수 있는 백신과 용해제의 파악
7. 새롭게 주문을 해야 할 백신의 수량과 용해제의 파악
8. 보건지소 등에 배정한 백신이 반납될 경우 보건지소에서의 보관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백신의 보관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제조회사와 연락을 하여 재사용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

항상 유효기간이 가장 적게 남은 백신을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저장고의 앞쪽으로 옮기고, '우선 사용'이라고 표시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백신 바이알은 원래의 포장 박스에 보관한다.

라. 백신 보관 일지

백신과 용해제의 도착일시, 수량, 인수자 및 점검자의 이름, 도착시의 백신과 용해제의 상태(도착 당시 백신을 보관한 용기의 온도, 백신의 손상 등), 인수한 백신의 이름, 각각의 백신의 회사이름, 백신의 종류(1인회용 백신, 다인용 백신, 프리필드 백신), 백신 제조번호(lot number), 각각 제조번호에 따른 유효기간, 인수한 백신의 수, 사용, 폐기, 손상이 된 백신의 수와 남은 수가 포함이 되도록 한다.

마. 백신 사용일지

매일 사용, 폐기, 손상이 된 백신의 수를 기록한다.



IV 백신 보관시 점검 사항

가. 백신과 용해제의 보관

1. 백신 종류에 따른 특성

- 1) 사백신은 열과 냉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 되지 않으면 백신의 역가가 떨어진다. 잘못 보관된 백신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으므로 백신 보관 온도를 항상 권장 온도 범위에서 유지시킨다.
- 2)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 virus, HPV),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Measles, Mumps, Rubella, MMR), 로타바이러스 백신 (Rotavirus), 수두백신 (Varicella) 등은 빛에 굉장히 민감하므로 보관에서 접종 시 까지 일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로타바이러스 백신, 수두 백신은 보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쉽게 백신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동결건조 백신과 용해제

- 1) 동결건조 백신은 백신의 일반적인 원칙, 즉 2~8℃에서 보관이 되어야 하고 온도 변화의 안정성을 위하여 5℃에 보관이 되도록 한다.
- 2) 용해제는 상온이나 냉장고 보관이 다 가능하며 냉장고에서는 백신과 달리 냉장고 문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동결건조 백신 접종 시 백신회사에서 제공한 용해제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백신과 용해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 3) ActHIB[®] 같은 백신은 용해제를 백신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3. 백신에 용해제 혼합 후 백신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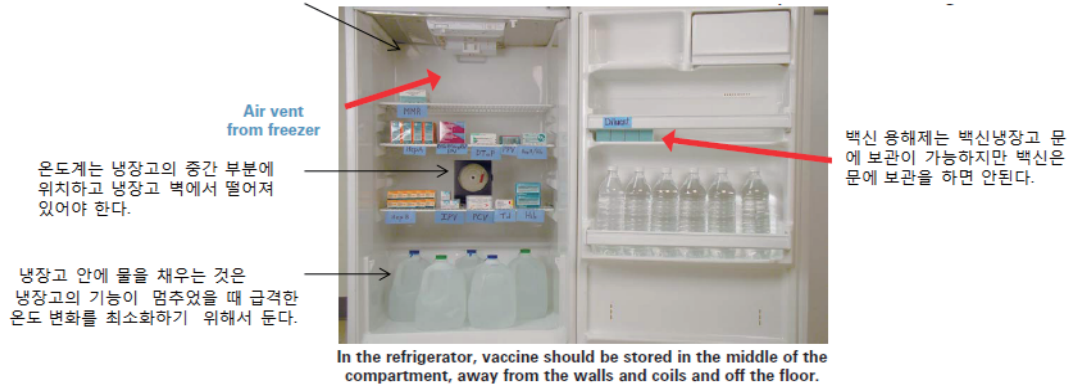
백신 회사가 권장한 시간 내에 접종을 해야 하며, 가능하면 혼합 후 즉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미리 예상을 해서 혼합을 하지 말고, 접종을 받을 사람이 왔을 때 접종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접종을 받을 백신을 확인을 한 후, 백신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혼합을 시작한다. 이때 혼합을 할 때는 동결건조 백신 내용물이 용해제에 잘 녹도록 충분히 흔들어 주어야 한다.

4. 백신 보관 시 백신의 냉장고에서 위치, 보관 시 주의사항들

- 1) 냉장고 구조상 바닥면에는 모터가 있어 온도가 높게 유지될 수 있으며, 냉장고 상단부에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팬이 있어 찬바람이 많이 나와 냉장고에서 온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냉장고의 온도가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온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냉장고 공간에서 중간에 백신을 두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 온도계를 두어서 냉장고 온도가 2~8℃, 가장 안정적으로는 5℃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2) 백신을 냉장고 벽에 너무 가까이 두게 되면 냉장고 벽의 온도에는 냉매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냉장고 벽에서 10cm를 띄워서 보관한다.
- 3) 백신은 백신 종류별로 정리를 해야 하며, 같은 종류의 백신들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한다.
- 4) 백신이 정리된 후 백신마다 백신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기 좋게, 편리하게, 혼동이 없도록 한다. 특히 같은 백신이 성인용, 소아용으로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위치에 두지 말고 따로 두어서 사용함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 5) 다인용 백신은 첫 사용시간을 백신에 기입을 하여 유효기간 이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6) 백신의 위치는 유효기간 순서대로, 즉 새롭게 들어오는 백신이 가장 뒤에 위치하도록 한다.
- 7)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Human papilloma virus, HPV),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Measles, Mumps, Rubella, MMR), 로타바이러스 백신 (Rotavirus), 수두백신 (Varicella) 등 생백신은 빛과 열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 8)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은 냉장고 문에 두어서는 안 된다.
- 9) 냉동고에 아이스 팩을 넣어두고, 냉장고에 물병을 넣어두면 냉장고 고장, 전원의 문제 등으로 냉장고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냉장고 내의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 해준다. 아이스팩은 냉동고 벽을 따라서, 혹은 문에 보관을 할 수 있으며, 물병은 냉장고 아랫부분과 문에 보관할 수 있다.
- 10) 다인용 백신은 사용을 시작할 때 백신에 사용 시작 날짜를 쓰고 유효기간이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BCG 피내용 백신은 개봉 후 4시간 이내 사용, 일본뇌염 사백신은 당일 사용이 원칙이므로 해당 시간이 경과한 후 백신을 재사용해서는 안다.



냉장고에서 가장 찬공기가 나오는 곳으로 2°C 이하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으므로 백신을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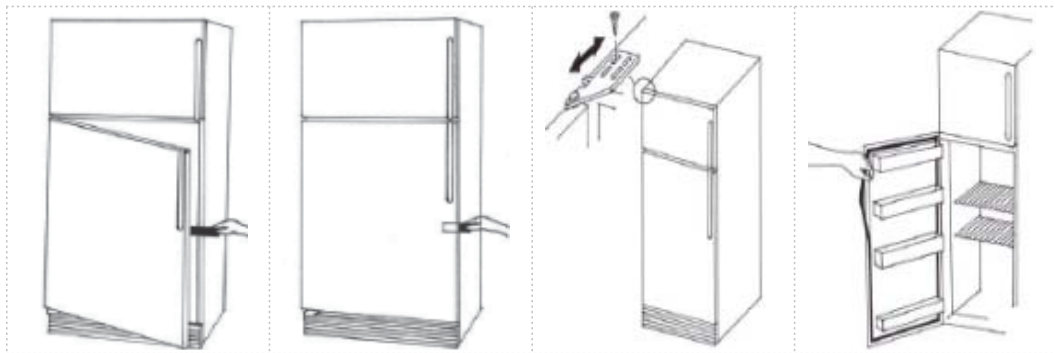
〈그림 3〉 백신은 냉장고에서 온도 변화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중간에 두며 냉장고 벽과는 10cm를 띄운다. 백신은 각각의 백신명이 적힌 작은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사용하는데 혼돈이 없도록 한다.

나. 냉장고 내부온도 점검

- 하루에 2회, 일과 시작 직전, 일과를 마친 후 점검을 하여 기록 하며, 기록을 할 때 냉장고 문이 완전히 닫혀 있는 지, 냉장고 문과 본체 사이의 공간에 새는 것이 없는지 고무로 된 도어가스켓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 일과 중에도 책임자는 수시로 온도를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림 4〉 냉장고의 온도는 하루에 최소한 2회 기록을 하며, 온도 점검 시 냉장고 문의 가스킷이 새는가를 동시에 확인한다.



〈그림 5〉 냉장고 문의 가스킷이 새는지 여부와 문의 경첩, 냉장고 문의 기울기 등을 점검한다.

2. 사용 중 냉장고 온도가 권장 온도를 벗어나는 경우 백신 보관 책임자에게 알려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냉장고 청소

1. 냉장고 코일과 모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에 있는 코일과 모터를 청소를 해주는 것이 냉장고의 기능향상, 고장방지, 냉장고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부드러운 천이나 솔,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청소를 해주면 된다. 이 청소기간은 수 분간이므로 청소기간 동안 굳이 백신을 다른 곳에 옮길 필요는 없다.



2. 냉장고 내부 청소

한 달에 한 번 세균이나 진균 증식을 억제하게 위하여 냉장고 내부를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미리 준비해둔 아이스 팩과 아이스박스 등에 백신을 옮긴 후 청소를 해야 한다. 백신을 옮긴 후 역시 온도 점검은 계속 해야 한다.

냉장고 전원을 끈 후에 내부 공간을 따뜻하고 약한 비눗물로 닦고 물로 다시 닦아내고 건조 시킨다. 건조가 다되면 다시 전원을 켜 후 온도 유지를 확인 후 백신을 다시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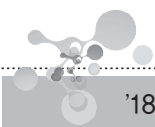
V 백신 보관 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들

가. 취해야 일반적인 조치사항들

1. 먼저 백신 보관 책임자 혹은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가 되어야 한다.
2. 백신 냉장고가 있었던 공간의 온도를 측정하고 백신 보관이 얼마동안 잘못 보관이 되었는지를 확인, 백신 냉장고 내부의 온도를 측정 후 기록한다.
3. 이 기록들을 토대로 백신 회사에 연락을 하여 백신의 잘못된 보관 상태를 보고하고 백신이 사용 가능한지를 알아본다.
4. 보관이 잘못된 백신들은 다시 사용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는 사용하지 않도록 따로 보관을 하여야 한다.
5. 냉장고 고장에 따른 백신 보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냉동고에 있던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보관한다. 역시 이때에도 백신 보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나. 백신 냉장고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점검해야 할 것은?

1. 백신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가 있는 경우
 - 1) (전기플러그가 꼽혀 있는가?)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혀 있는 지를 확인한다.
 - 2) (냉장고 문은 정확하게 닫혀 있는가?) 냉장고 문이 실수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 3) (냉장고 문의 도어가스킷의 문제) 도어가스킷이 노후가 되어서 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한다.
- 4) (온도계 위치) 온도계의 위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온도가 실제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5) 자동온도 조절 장치의 스위치를 확인하여 실제 온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온도를 낮추고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한다.
- 6) (냉장고가 있는 방안의 온도가 너무 높지 않는지?) 온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면 환기를 시킨다.
- 7) (냉장고 코일에 먼지가 있는지?) 확인 후 먼지가 있으면 진공청소기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먼지를 제거할 때는 냉장고 스위치를 끈 후 냉장고에 있는 백신들을 다른 냉장고, 아이스박스에서 2-8℃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냉동이 필요한 백신은 아이스박스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후에 일시적으로 보관한다. 이후에 코일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다시 냉장고에 백신을 넣기 전에 냉장고 온도가 잘 유지가 되는 지를 30분 동안 관찰 후 재사용을 한다.

2. 백신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 있는 경우

- 1) (온도계 위치) 온도계의 위치가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온도가 실제 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 2) 자동온도 조절 장치의 스위치를 확인하여 실제 온도가 낮다고 판단이 되면 온도를 올리고 30분 동안 온도를 점검 한다.

3. 백신 냉장고가 소리가 많이 날 때

- 1) 냉장고에서 소리가 나는 것인 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소리가 나는 지를 먼저 확인한다.
- 2) 냉장고의 코일 부분이나 이음새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지 확인을 하고 혹시 이음새 부분에 나사가 풀어져 있는 지도 확인한다.

4. 백신 냉장고가 멈추었을 때

- 1) (전기플러그가 잘 꼽혀 있는가?) 전기 플러그가 콘센트에 정확하게 꼽혀 있는지 확인한다.
- 2) 자동온도조절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 백신 냉장고의 문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는?

백신 냉장고 문에는 고무로 된 도어가스킷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이를 이용하여 도어가스킷과 문 사이의 밀폐정도를 확인한다. 만약 밀폐정도를 확인 후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교환 조치를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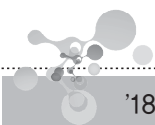
백신 문의 경첩이 잘못 고정되면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못하고, 도어가스킷 기능도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온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문의 기울기, 문을 닫았을 때 문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온도계의 문제

표준온도계의 보정이 잘 되었는지, 백신 냉장고 안에서 온도계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

마. 일과 중 갑자기 냉장고가 멈춘 경우, 일시적인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1. 즉시 냉장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고장의 원인을 찾는다.
2. 가능하면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 냉장고 온도만을 확인을 한 후 냉장고가 멈춘 시간, 현재 냉장고의 온도 등을 기록한다.
3. 백신 상태를 백신 공급회사와 상의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4. 만약 냉장고의 온도가 유지는 되지만 냉장고의 기능이 금방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 백신 공급업체로 백신을 이송한다. 미리 준비해 둔 얼음주머니,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백신을 옮기는 것이 좋다.
5. 일시적인 정전으로 인한 냉장고의 기능이 정지 된 경우에는, 곧 전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면 백신 냉장고 문을 가급적 열지 말고 온도 측정을 하면서 경과를 본다. 만약 백신 냉장고 온도의 변화를 확인을 할 수 없다면 문을 열지 말고 백신 냉장고가 있었던 방안의 온도, 냉장고가 이상이 있었던 시간, 다시 전원이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의 온도를 기록한다. 만약 냉장고 이상이 확인이 되는 동안 백신 보관의 권장 온도를 벗어날 때에는 즉시 백신들을 비상 보관을 할 수 있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한다.
6. 백신들을 비상 보관을 한 경우에는 백신 냉장고 안의 온도, 백신 냉장고가 있던 방안의 온도, 백신 냉장고가 다시 작동할 때 까지의 시간, 비상 보관 시의 온도와 시간 등을 기록한 후 백신회사와 상의하여 백신 재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 주말동안 정전이 되었거나 출근을 해보니 정전이나 냉장고 기능 이상이 발견된 경우, 부적절한 백신 보관의 기간을 알 수 없는 경우

1. 마지막으로 점검한 백신 냉장고 온도, 측정된 시간, 발견 당시의 백신 냉장고의 온도와 시간, 백신 냉장고가 있었던 곳의 온도 등을 기록한다.
2. 이상이 있었던 백신 보관 기록을 토대로 백신을 공급한 업체와 상의 하여 재사용여부를 결정한다.
3. 보관에 이상이 있었던 백신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사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이 될 수 있는 다른 냉장고 또는 얼음을 채운 아이스박스 등에 보관한다.

대부분 백신은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생백신은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문제라도 보관상의 문제는 백신을 공급한 회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부 록 10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방법

1.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후에 1회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2회로 완료하며, 접종기록은 (처음접종) 1차, 2차에 순차적으로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가다실9)	'16.4월 출생아, 생애 첫 인플루엔자 2회 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16.10.20	2016.11.22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매년	접종추가				

* 만약, 과거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첫째 접종자로 간주하고 2회 접종

2. 이전 절기에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2회)을 완료한 대상은 해당 절기부터는 1회 접종 대상으로, (매년접종) 1차에 매년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가다실9)	'13.2월 출생아, 생애 첫 인플루엔자 2회 접종 완료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13.09.24	2013.10.29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20151001 20140924	접종추가				

해당 절기 1회 접종 기록은 (매년접종) 1차에 등록

* 이전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6개월~만 9세 미만 소아들도 백신주에 따라서 2회 접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권고

3. 이전 절기에 생애 첫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회 접종을 하였다면, 해당 절기에 2회 접종을 완료하며, 1회 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은 (처음접종) 1차에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가다실9)	'15.3월 출생아, 이전 절기 1회 접종, 해당 절기 2회 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161017	2016.11.17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20150921	접종추가				

해당 절기 1회 접종 기록은 (처음접종) 1차에 등록

4. 만 9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는 매년 1회 접종으로, 해당절기 1회 접종에 대한 접종기록은 (매년접종) 1차에 등록함

감염병명	백신명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사람유두종바이러스	HPV(가다실9)	만 9세 이상 접종대상자는 매년 1회 접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처음접종)	2008.12.22	2009.01.23				
	인플루엔자 (매년접종)	2017.11.20	접종추가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20171120 20161020	2차	3차			

해당 절기 1회 접종기록은 (매년접종) 1차에 등록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I. 아나필락시스 정의

1. 개요

- 아나필락시스는 원인 알레르겐에 노출된 후 급성으로 발생하는 심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을 말하며 여러 가지 신체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피부 증상으로는 발진, 가려움증, 입술과 입안 부종, 호흡기계 증상은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심혈관계 증상은 저혈압, 실신, 가슴통증, 빠른 맥박, 그리고 소화기계 증상으로 복통, 구토,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그림 1].
- 아나필락시스는 우선 원인 물질 또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내에 1) 피부 반응과 호흡기 또는 심혈관계 반응이 나타난 경우, 2) 피부, 호흡기, 심혈관계, 소화기계 증상 중 2개 기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단이 가능하다[1].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나 일부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100만건 당 0.65건의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2]. 예방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방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시 된다. 특히, 예방접종은 주로 1차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알레르기 원인물질 또는 특정 자극에 노출된 후 즉시 또는 수십 분 내에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야 합니다.

>> 호흡기



>> 심장혈관계



>> 피부



>> 소화기



>> 전신 및 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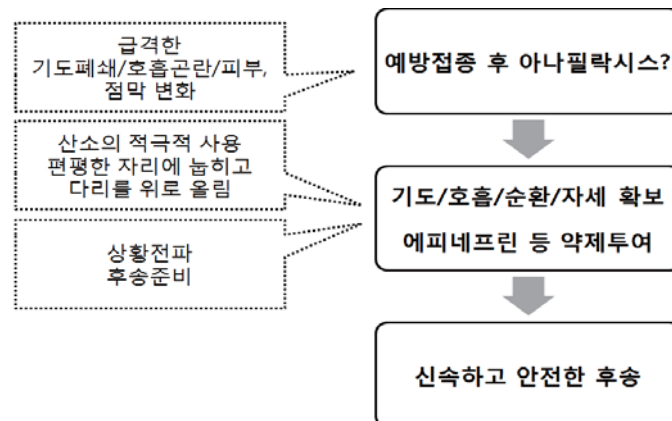
[그림 1] 아나필락시스 주요 증상

II. 아나필락시스 대응법

1. 신속대응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초기 대응은 상황평가, 도움요청,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후송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

- 1) 상황 평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증후를 조기에 인지하고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담당의료인은 예방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하는 시간 중에 백신 접종부위에 부종, 발적 등이 발생하면 전신 과민반응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찰 할 필요가 있다.
- 2) 도움요청 : 전신 과민반응이 발생하면 우선 관련 상황을 의료기관내 신속히 전파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담당의사를 호출한다.
- 3) 응급처치 : 담당의사는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한 뒤 간호사의 보조를 받으면서 기도확보, 산소공급,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투여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 ※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에 필요한 1차 약제이고 호흡곤란을 완화시켜주며, 적절한 심박출량을 유지시킴
 - ※ 에피네프린 투여 후에도 증상 및 혈압 조절이 안되는 경우 10~20분 간격으로 3회까지 투여가 가능하며, 항히스타민은 발진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주어 2차 약제로 사용 가능
- 4) 응급의료기관 후송 : 응급처치는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담당의사 주도하여 진행하고 구급차가 도착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에 후송한다.



[그림 2] 아나필락시스 대응 흐름도



2. 사전 준비 사항

● 장비 구비 및 후송체계 마련, 응급상황 발생 시 담당자별 역할 마련이 필요하다.

1) 응급처치 장비: 가)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탱크, 산소마스크, 앰부백, 에어웨이 나) 약제로는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다) 산소공급 장비는 소아용 /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준비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되어야 한다[표 1].

※ 약물은 환자의 연령, 체중에 맞는 용량이 투여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비치[참고]

2) 후송체계 마련 : 집중기관과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2개 이상 지정하고 전화번호, 위치, 후송거리 등을 파악해 두어야 한다.

3) 담당자별 역할 마련 : 기본적으로 의사, 간호사, 보조원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의사는 환자 상태 평가 및 응급처치 지휘, 간호사는 응급처치 보조, 보조원은 응급 상황 및 후송 준비 상황 전파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표 2].

[표 1] 응급처치 장비 구비 및 점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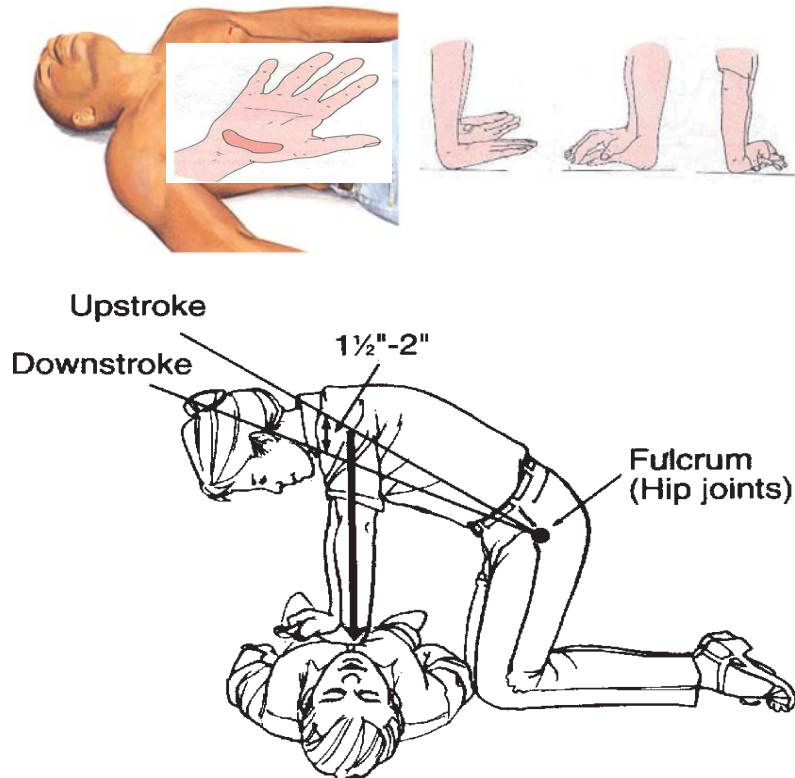
장비	점검 사항
포터블 산소탱크	• 산소 충전 상태
산소 마스크	• 소아용 / 성인용 구비
앰부백	
에어웨이	
에피네프린	• 약제 유효기간(백신과 별도 보관)
항히스타민	• 소아용 / 성인용 접종 용량 준비

[표 2] 담당자별 역할

연령	역할
예진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상태 평가 • 기도, 호흡 확보·유지, 순환기 및 의식상태 파악 • 약제 투여 필요성 판단 및 지시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후송 시 동행
간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 전파 및 도움 요청 • 심폐소생술 시행 필요성 판단 및 시행 • 응급간호관리 • 약제 준비 및 투여 • 후송 시 동행(필요시)
보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내 상황 전파 • 응급의료센터(응급실) 상황 알림, 후송 보조 • 119신고 및 구급차 호출
보건소 구급차 운전기사	• 환자 후송

3. 심폐소생술(필요시)

-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킨 경우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 ※ 의료인의 경우 맥박 확인(10초 이내) : 성인 및 소아는 경동맥 또는 대퇴동맥으로 확인하고 영아(12개월 미만)의 경우 목이 짧고 굵으므로 위팔 동맥에서 확인
- 성인 심폐소생술 순서(C-A-B)
 - 1) 흉부압박(Compressions) :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 연결선과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에 놓고, 30회 흉부압박을 시행(분당 100회 속도, 4-5cm 깊이)[그림 3]
 - 2) 기도열기(Airway) :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3] 흉부압박법



● 소아 및 영아/신생아 심폐소생술 순서(C-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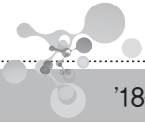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 1) 흉부압박(Compressions): 손을 흉부압박 위치(양쪽 젖꼭지를 연결하는 가운데 흉골이 만나는 지점)의 아래를 압박 위치에 놓고, 30회 흉부압박 시행(분당 100회 속도, 4cm 깊이)
 - I) 소아 : 한 손을 사용하여 손바닥 끝부분으로 압박[그림 4]
 - II) 영아/신생아 : 한 손을 사용하여 두 손가락으로 압박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엄지손가락으로 압박 [그림 5]
- 2) 기도열기(Airway) : “머리기울임(head tilt)-턱들어 올리기(chin lift)”
 - * 영아/신생아의 경우 기도를 수평으로 유지
- 3) 2회 인공호흡(Breathing)
- 4)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하여 반복



[그림 4] 소아 심폐소생술 위치 및 방법 [그림 5] 영아/신생아 심폐소생술 위치 및 방법

● 흉부 압박 방법

연령	압박/호흡 비율	
	1인 구조자	2인 구조자
신생아	3:1	3:1
영아(<1세)	30:2	15:2
소아	30:2	15:2
성인	30:2	30:2



<참고문헌>

1. World Allergy, Organization. World Allergy Organization survey on global availability of essentials for the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anaphylaxis by allergy-immunology specialists in health care settings. *Annals of allergy, asthma & immunology* 2010 May;104(5):405-12.
2. Bohlke K, Davis RL, Marcy Sm et al. Risk of anaphylaxis after vaccin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Pediatrics*. 2003 Oct;112(4):815-20.



참고 1

아나필락시스 치료제 (체중·연령별 용량)

연령대	체중(kg)	에피네프린 근주용량	항히스타민 (디펜히드라민 근주용량 12.5 mg/mL)
1-6개월	4-7kg	0.05mg(0.05mL)	5mg
7-18개월	7-11kg	0.1mg(0.1mL)	10mg
19-36개월	11-14kg	0.15mg(0.15mL)	15mg
37-48개월	14-17kg		20mg
49-59개월	17-19kg	0.2mg(0.2mL)	30mg
5-7세	19-23kg		
8-10세	23-35kg	0.3mg(0.3mL)	40mg
11-12세	35-45kg	0.4mg(0.4mL)	
13세 이상, 성인	45kg 이상	0.5mg(0.5mL)	50-100mg

부 록 12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FAQ

예방접종 일반사항

Q 1.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감기는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하며,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기관지,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협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에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Q 2.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 열감(발열),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근육통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 구토 및 설사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 3.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합병증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소아, 만성질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얼마동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 증상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보통 1~4일(평균 2일) 정도 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대개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일 동안 감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독감을 일으킬 수도 있나요?

☞ 현재 예방접종 사업 대상 백신인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은 바이러스 성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성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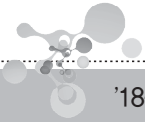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Q 6.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가 백신만 맞아도 예방효과가 충분한가요?

☞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2가지 아형 및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1가지에 대한 항원이 포함되어 있고 인플루엔자 4가 백신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1가지 더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B형 인플루엔자는 4-5월 소규모로 늦게 유행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인은 인플루엔자 3가로도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는 약 70~90%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한 성인보다 백신 예방효과가 약간 떨어지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경과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Q 8.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했는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더라도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약 2주 가량 경과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거나 방어 항체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종한 백신의 바이러스와 당해 유행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릴 수 있습니다.

Q 9. 임신 동안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임신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임신 시 인플루엔자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임신 중에 있는 사람은 임신 시기에 상관없이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 10. 과거 백신접종 경력이 없는 소아가 만 35개월에 1차 접종을 하고 만 36개월에 2차 접종을 하는 경우 백신 접종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의 접종용량은 백신 접종 당시의 연령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35개월에 1차 접종 시는 0.25mL를 접종하고, 만36개월에 2차 접종 시는 0.5mL를 접종하면 됩니다.

Q 11. 26개월 된 아기입니다. 작년에 처음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였는데 1회만 접종 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첫 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8-2019절기 백신으로 4주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 2회 접종을 권고합니다.

사업 총괄

Q 12.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만 65세 이상 및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입니다. 접종대상자의 연령 및



접종횟수에 따라 사업 시작일이 다르므로 사업지침의 사업 시작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3.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연령별 접종 시기를 달리했는데,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에 해당되는 어르신은 10. 2. ~ 10. 10.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지침의 규정은 사업 시행초기 쏠림현상 방지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75세 이상은 10. 2.(화)부터, 65세 이상은 10. 11.(목)부터 접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그렇지만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두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경우 10.2(화)~10.10.(수)까지 만 65세~74세 이하를 접종했을 경우라도 접종 등록 및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 예외인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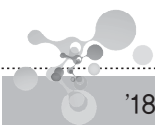
- ①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 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에 포함된 시군구에 거주,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 ② (당일진료 발생)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환 등으로 당일진료 발생
 - ③ (촉탁의 접종)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
 - ④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의 편의성을 위해 시행
- * 「장애인복지법」 외 타법에 명시된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음

Q 14.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의 접종횟수별 접종시기를 달리했는데, 1회 접종 대상자를 9. 11. ~ 10. 1. 에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이 가능한가요?

- ☞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백신 공급 가능 시기 및 2회 접종이 필요한 소아의 적절한 면역획득 등을 고려하여, 2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9. 11(화)부터, 1회 접종이 필요한 대상자는 10. 2(화)부터 접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Q 15.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

- ☞ 사업 개시일 이전에 접종한 건은 비용상환이 불가합니다. 접종대상자의 연령 및 접종횟수에 따른 사업 시작일 이후에 접종된 건부터 비용상환이 가능합니다. 단, 접종 내역의 전산등록은 가능합니다.



Q 16.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지더라도 진료비 청구는 문제없나요?

☞ 예방접종 당일 고혈압 등 타질환으로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청구는 가능하며, 기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1577-1000)하시기 바랍니다.

Q 17. 이번 절기 어린이인플루엔자 접종 사업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라고 하는데, 입학이 늦은 2005년생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18-2019절기 사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 12세 어린이로, 2006. 1. 1. ~ 2018. 8. 31. 출생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이 늦은 2005년생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Q 18.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한다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자,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내·외국인 등) 대상자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내국인에 준하여 비용상환이 가능하나,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외국인등록 면제자* 제외)은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주한 외국공관 직원 자녀 등

※ 2017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체류자는 관리번호 발급자에서 제외함

Q 19. 무료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nip.cdc.go.kr>) 및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관인증서 등록 관련

Q 20. 전산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시 이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데, 기관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은 “개인인증서”로 하고, 이후 전자계약 시에는 의료기관정보에 ‘개인인증서’가 아닌 “기관인증서”를 등록해야 계약 시 서명이 가능합니다.

Q 21. 계약에 필요한 의료기관인증서는 어떤 인증서를 등록하면 되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급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 조회 시 사용하는 기관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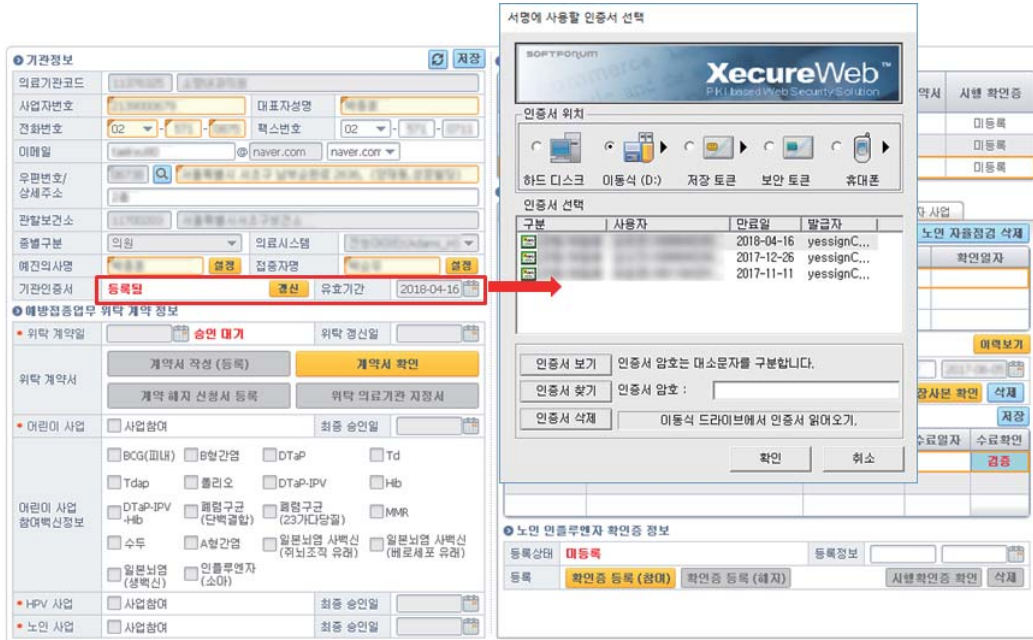
* 인증서 갱신 시 의료기관정보도 갱신(재등록) 필요

Q 22. ‘의료기관정보’에서 기관인증서 등록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사업자번호가 일치하지 않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기관인증서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경우입니다. 의료기관정보 메뉴 좌측 상단의 사업자번호(숫자10자리)를 확인하여 올바른 번호로 변경 저장 후 기관인증서를 다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가 올바르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사업자번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메시지가 발생할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23. 기관인증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계약신청’ 화면에서 좌측 상단 기관정보 내 기관인증서 유효기관을 확인 하신 후 [갱신]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인증서 등록이 안될 경우 기관정보 내 사업자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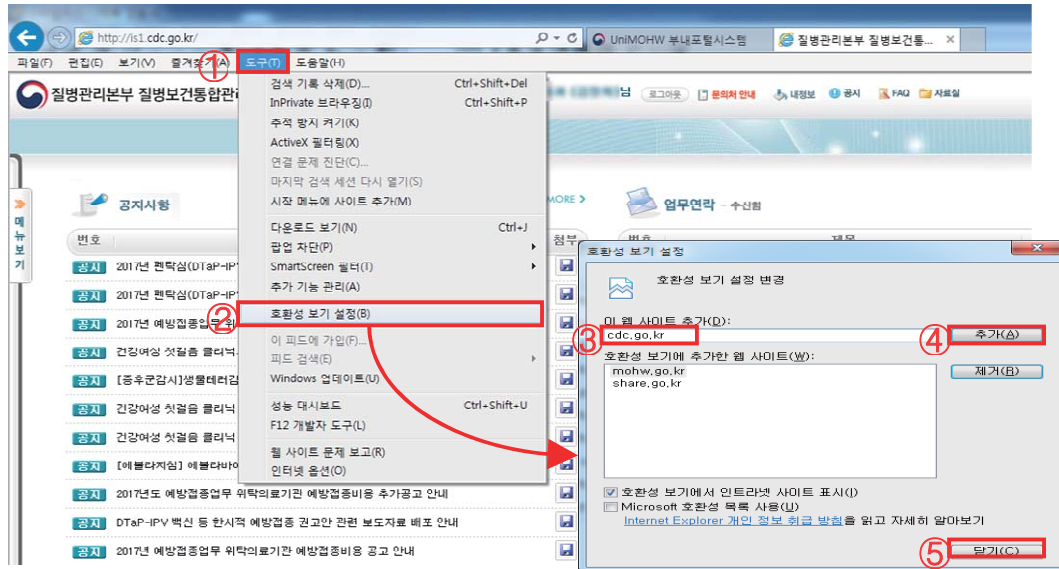
Q 24. 기관인증서 등록을 완료했는데 계약신청 메뉴에서 전자문서 작성 후 전자서명 단계에서 “서명에 실패 했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관인증서 등록 이후에 기관인증서를 재발급(갱신) 한 경우는 기존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전자서명이 불가합니다. 작성중인 전자문서를 닫은 후 ‘의료기관정보’에 등록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인증서로 갱신(재등록) 한 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Q 25. 기관인증서 갱신을 클릭하면 “netscape 6.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홈페이지 상단의 ‘도구>호환성보기설정’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의 ‘cdc.go.kr’주소 확인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닫은 후 다시 인증서 갱신을 시도합니다.

※ 상단 메뉴의 ‘도구’가 보이지 않을 경우, 키보드에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T’누름



교육수료정보 관련

26. 계약신청 메뉴의 교육수료정보에서 교육이수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육정보는 교육수료증을 다운로드 후 상단의 교육 수료번호를 입력하고 '검증' 버튼을 클릭해서 검증을 하시면 교육수료 완료시에 '수료'로 바뀌며 검증이 완료됩니다.

* 교육수료증은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edu.cdc.go.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7.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은 아닌데, 「[보수교육]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수료증으로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체결 할 수 있나요?

☞ 「[보수교육]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과정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또는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기관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신규참여를 원하시는 의료기관이시라면 「[기본교육]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을 이수하셔야 위탁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Q 28. 기존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관에 참여중입니다. 새롭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교육이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기관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 「[기본교육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 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후 필수 제출 서류(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통장사본 등)를 준비하여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Q 29.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새롭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및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모두 참여하려면 어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요?

☞ 어르신 및 어린이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모두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2가지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기본교육]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을 먼저 이수하셨다면 「[기본교육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으로 수강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는 「[기본교육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을 먼저 이수하셨다면, 「보수교육」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Q 30.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할 의사가 다수인 경우, 모두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시행 및 사업내용 숙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은 모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위탁 계약 시에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1인 기본)의 교육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교육시스템(<http://edu.cdc.go.kr>)에서 회원가입(실명 가입) 및 개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접종 의사가 다수인 경우, 회원 가입시 개인의 은행 공인인증서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1.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출력해보니 성명란에 “병원이름” 또는 “타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 교육 수료증에는 회원가입 시 성명란에 기입한 대로 출력이 됩니다.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기입을 하고 이미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성명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실제 예방접종 시행 의사 실명으로 다시 회원가입 하시고 재수강하셔야 합니다. 단, 교육과정 수강 전이라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48~6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32. 2015년도 6월에 「기본교육」 어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올해가 계약갱신 기간인 3년인데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네. 기본교육 이수 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2년 이내의 교육과정만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는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통장사본 업로드

Q 33.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을 신청하려는데 통장사본을 업로드 해야 하나요?

☞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여 위탁계약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 사업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위탁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계좌로 비용을 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통장사본 업로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통장사본은 이미지 파일(JPG, GIF, PNG)로 업로드 필요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계약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 어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계약 구비 서류: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사전 자율점검표

Q 34. 비용지급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위탁계약 체결 이후 계좌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신청 메뉴에서 통장사본을 다시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한 통장사본을 보건소에서 승인한 이후부터 변경된 계좌정보로 비용지급 됩니다.

계약서, 지정서

- Q 35. 현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사업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하시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별 탭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 후 참여 확인증만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36. 전자계약 체결 후 의료기관에서 '위탁 의료기관 지정서' 출력이 가능한가요?**
- ☞ 네,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하면 계약이 성립되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계약서와 지정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관련 기타

- Q 37. 위탁 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조건은 무엇입니까?**
- ☞ 위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의료기관 예진의사는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 ☞ 신규 참여 의료기관은 계약 전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매년 8월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38. 계약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려는데 팝업(사업참여 확인증,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사전자율 점검표, 위탁계약서 등) 화면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관련 프로그램이 미설치된 경우입니다.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ezPDFReader 프로그램 설치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하고, 시스템 종료 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단, 프로그램 설치 시 모든 인터넷 창을 닫아야 합니다.
- * 만약, 설치문구가 보이지 않는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프로그램/ 매뉴얼'에서 '(전자계약, 기관점검 시스템 관련) ezPDF 수동 설치파일' 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Q 39. 2015년도에 어르신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고 올해 처음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참여확인증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전자계약서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업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업무가 모두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계약 당시 계약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신 후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 참여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40. 팝업화면은 보이는데, 내용 작성 후 [전자문서등록]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키보드에서 “Alt키”를 눌러 상단의 ‘보기-기본도구’를 클릭하면 해당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신 수급 관련

Q 41. 어르신 지원 사업용으로 현물공급 받은 백신을 어린이에게 접종해도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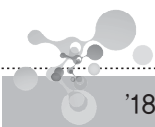
☞ 어르신 지원 사업과 어린이 지원 사업은 백신 공급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접종을 위한 백신은 비용상환 방식이므로, 개별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Q 42. 어르신 지원 사업의 위탁의료기관 백신 배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 보건소 국가사업목표량(주민등록 상 65세 이상 인구의 83.0%)과 지역내 인구수, 지난절기 공급량, 사업초기 3주 이내 접종건, 총사용량, 회수량, 지역적 특성 등을 참고로 검토하여 백신량을 배정합니다.

Q 43. 위탁의료기관에서 어르신 지원 사업의 백신 예상 소요량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작성 시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작성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백신 예상 소요량 작성 시 사업기간 내 소요량을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작년 동기간(인플루엔자 사업기간)에 의료기관 내원자 수, 지난 절기



백신공급량·사업초기 3주 이내 접종건·총사용량·회수량, 예진 의사 1명 당 하루 100명이라는 상한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산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백신 포장단위가 20 도즈이므로 최소 20 도즈부터 공급이 가능하며, 날개로는 공급이 불가합니다.

Q 44. 위탁 의료기관에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위탁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예상수요량을 보건소에서 검토·확정하여 백신 배정량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백신배정량의 90~95%는 9월 중 의료기관으로 공급이 완료되며, 그 외 5~10%는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의료기관의 추가수요가 있을시 공급하게 됩니다(단, 백신 배정률은 지역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 기간내 의료기관의 백신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백신을 추가공급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추가 수요량에 대해 검토 후 추가 공급을 실시합니다.

Q 45. 공급 받은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을 모두 소진하고 백신 추가 신청건의 공급이 늦어지는 공백기가 생긴다면 의료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백신으로 먼저 접종을 하고 추후 백신을 공급받으면 문제가 되는지요?

☞ 국가사업용으로 공급된 백신 외에 의료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이 소진되기 전 관할 보건소에 추가 공급 요청을 통해 사전에 백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 보관 중 파손, 타 대상자(중복접종 포함)에게 접종한 물량은 의료기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신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Q 46. 위탁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을 사업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해 백신이 남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되나요? 의료기관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 신청한 백신이 남을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 남은 백신은 보건소에서 전량 회수 예정입니다. 과다한 백신 신청으로 사업종료 후 백신이 많이 남거나 보건소의 재분배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위탁계약 및 백신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운영 예정인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를 통해 원활한 백신 재분배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Q 47. 어르신 지원 사업기간 종결 시 백신 잔량이 발생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의 사업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관할 보건소로 잔여 백신을 모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48. 어르신 지원 사업용 백신이 파손되거나 바늘이 오염되어 접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제품은 백신을 공급한 업체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인수 이후 의료기관 보관 실수로 백신이 파손되거나 오염된 경우에는 자체 보유 물량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Q 49. 36개월 미만 어린이에게 0.5ml 제형의 백신을 절반 접종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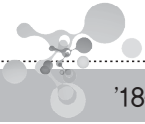
☞ 36개월 미만 어린이에게는 0.25ml 제형의 백신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백신 사용 모니터링을 통해 심각한 수급 불안정 발생이 우려될 경우 0.5ml 백신 사용 여부, 시기, 지원비용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반응 관련

Q 50.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 예방접종입니다. 만약 접종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서류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 국가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 시도 기초피해조사 및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기각 시 이의신청 1회 가능



☞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을 대비하여 예방접종의 일반원칙 및 접종 전, 후의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51.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가요?

☞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한 응급처치 장비 구비가 계약서상에 명시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수행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의료기관용)

발 행 : 2018년 8월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편 집 인 : 공 인 식

편집위원 : 유정희, 여상구, 이화영, 김은성, 김명진, 김동욱,
김선주, 김윤주, 이규영, 박윤경, 홍수진, 최미혜,
김정희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전 화 : 043-719-6848~51

F A X : 043-719-6858

편집·기획 : 디자인신화

(043-224-5357)



2018 - 2019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위탁 의료기관용 | 2018. 8

